

발 간 등 록 번 호

11-1352000-003273-10



2023년 시·도 사회서비스원 표준운영지침 II



2023년 표준운영지침 II 주요 변경내용

구 분	기존 내용	개정 내용	페이지
II. 사회 서비스 원 사업	제1장 사회서비스원 사업개요 〈신설〉	제1장 사회서비스원 사업개요 가. 추진배경 ● <u>인구 고령화, 맞벌이, 1인 가구 증가 등 사회구조 변화로 아동·노인 돌봄 등 사회서비스 수요가 다양하게 분화하며 증가</u> - 이용자 욕구 다양화 및 돌봄 필요 대상 확대에 따라 “더 나은 사회서비스 제공 환경 구축” 필요성 제기 ● <u>다양한 서비스의 개발과 확산을 위해 민간협력 등 시·도 사회서비스원을 포함한 공공의 역할을 새롭게 정립하고</u> - 취약계층 대상, 민간기피 분야 등에 대한 돌봄 사각지대 해소와 함께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역량과 의지가 있는 민간분야 지원·육성 필요	3
	가. 기본방향 ● 〈신설〉	나. 기본방향 ● <u>서비스원을 통해 민간협업을 활성화하고 사회 서비스 혁신지원을 강화, 민간 사회서비스 지원 기능 확대</u>	3
	나. 서비스원 사업범위	다. 서비스원 사업범위	4
	다. 서비스 유형의 결정 2 서비스 유형 선정기준 ● <u>시·도지사는 서비스원 시범사업의 안착과 향후 지속·확대 가능성 및 다음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서비스 유형을 결정함</u> ● <u>민간이 참여하기 어렵거나 공급 부족한 시설, 임직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위법 행위 발생 시설, 그 밖에 취약지 소재한 시설 등 위탁 운영을 통해 공공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는 시설(사업)에 대한 위탁운영 고려</u>	라. 서비스 유형의 결정 2 서비스 유형 선정기준 ● <u>시·도지사는 다음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서비스원의 서비스 유형을 결정함</u> ● <u>민간이 참여하기 어렵거나 공급 부족한 시설, 임직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위법 행위 발생 시설, 그 밖에 취약지 소재한 시설 등 위탁 운영을 통해 공공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는 시설(사업)에 대한 위탁운영 고려</u> - 다만, 서비스원에서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시설의 무분별한 위탁은 지양하며, 위탁 수수료 등을 통한 위탁 운영 경비 확보 필요	4

구 분	기존 내용	개정 내용	페이지
	● 그 외 <u>지역사회 통합돌봄, 통합재가급여 도입 등 국가 및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시범 사업과 적극연계하고, 해당 지역 특화사업 발굴 등을 권장</u>	- <u>위법행위 발생한 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문제시설을 정상화할 수 있는 지자체의 계획 및 지원 필요</u> ● 그 외 「<u>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u>」, 「<u>재가의료 급여</u>」 등 국가 및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시범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해당 지역 특화사업 발굴 필요	
	라. 사업관리 ● 시·도지사는 시·도 서비스원이 제출한 사업 계획서를 승인하기 전에 사업계획서에 포함된 사업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시·도 서비스원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마. 사업관리 ● 시·도지사는 시·도 서비스원이 제출한 사업 계획서를 승인하기 전에 사업계획서에 포함된 사업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시·도 서비스원 정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 다만, <u>시범사업의 경우 연중에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일정·예산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사업 계획서에 보건복지부 또는 중앙 사회서비스원에서 공모하는 시범사업 참여를 포괄적으로 포함하여, 시범사업 공모에 탄력적으로 대응 하도록 함</u>	6
	제5장 민간기관 지원사업 〈신설〉	제2장 민간기관 지원사업 1. 총칙 가. 목적 ● 서비스원관내 민간사회서비스제공기관에 대하여 경영컨설팅, 시설안전컨설팅, 종사자 교육, 기타 지역 특성을 반영한 특화사업수행등 민간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및 종사자에 대한 지원을 통해 사회 서비스 품질의 전반적 제고와 서비스 이용자 삶의 질 향상을 도모 나. 기본원칙 ● 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 역량을 효과적으로 강화하여 사회서비스의 제공 효과성을 제고하고 이용자의 만족도를 제고함으로써 사회 서비스 공공성을 실현 ● 아울러 역량있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을 발굴 하고, 성장을 촉진하고 규모화하여 전반적인 사회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한 노력 지속 추진 ● 지침에 제시된 경영 컨설팅, 시설안전 컨설팅, 종사자 교육 외에도 지역 내 수요를 반영한 지역 특화 민간 지원사업 운영 가능	9

구분	기존 내용	개정 내용	페이지
		다. 대상기관 ● 서비스원은 사업 역량이 취약한 기관에 대한 지원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경우에 따라 우수사례 확산이 가능한 역량 있는 민간 기관을 우선 지원할 수 있음 - 영세 소규모시설은 신청 절차를 수행할 인력 부족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서비스원이 선제적으로 지원 대상 기관을 발굴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함	
	〈신설〉 다. 경영 컨설팅 지원 사업 ('가'로 위치 이동) 1 추진 목적 ● (서비스질제고) 민간기관에 대한 경영컨설팅 지원 등을 통해 경영노하우 공유 및 서비스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 전반적인 사회서비스 질 개선 ● (상생경쟁) 경영컨설팅 지원으로 민간서비스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서비스원과의 질적 경쟁여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민간상생을 유도	2. 민간기관 지원사업 주요내용 가. 경영 컨설팅 1 개요 ● 서비스원의 다양한 운영 노하우를 공유하고 민간기관이 서비스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함으로써, 서비스의 전반적인 질을 높이고 역량을 강화함	10
	2 추진 방향 ● (현행) 정부평가(사회복지시설평가) 결과에 따른 마흡기관에 대한 사후컨설팅 및 향후 평가 향상을 위한 컨설팅 실시 ● (향후) 정부평가 및 지자체에서 추진되는 사회복지시설 컨설팅 이외에 회계, 인사·노무 분야 등의 경영능력을 향상시켜 서비스 질 제고와 연계가 가능한 컨설팅 실시	2 추진 방향 ● 정부평가와 연계되는 컨설팅 및 회계, 인사·노무 등의 운영능력을 향상시켜 서비스 질 제고와 연계가 가능한 컨설팅 실시	10
	3 사업운영 ● (전문분야 집중) 경영기법, 인사·노무, 재무회계, 법무 등 전문분야 컨설팅을 통해 실질적인 경영실적 향상으로 연계 - (경영기법) 전문 경영능력 배양, 조직의 버전제시, 조직의 가치공유 등 기관경영에 대한 기업가적 마인드 코칭 등	3 사업운영 ● (분야) 법률, 재무회계, 인사·노무, 홍보, 경영기법, 개인정보 보호, 서비스 전략 등 - 경영기법, 인사·노무, 재무회계, 법률 등에 대한 컨설팅을 통해 실질적인 경영실적 향상으로 연계 되도록 노력 * 상술한 컨설팅 분야를 사서원이 모두 수행할 필요는 없으며, 예산 및 인력의 상황에 따라 분야를 정함	10

구 분	기 존 내 용	개 정 내 용	페이지
	- (재무회계) 재무회계 규칙 개정내용(현금 주의, 단식부기 → 발생주의, 복식부기) 및 시설 회계처리 기법 등 컨설팅 - (인사노무) 인사·노무 분야의 개선사항에 대해 시설별 인사·노무 현황 및 미흡 사항에 대한 컨설팅 진행 ● (수행방식) 시범사업 수행 사회서비스원에서 분야별 컨설팅 수행계획을 수립하고 복지 시설의 신청을 받아 컨설팅 수행 * 지원대상은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소규모 영세시설을 우선 고려 - (사·도·서비스원) 지역 내 분야별 전문가 (회계사, 노무사 등)를 컨설턴트로 위촉* 하여 컨설팅 진행하고 경비를 지원 * 장기적으로는 서비스원에서 컨설턴트 양성사업 추진 - (중앙사회서비스원) 분야별 컨설팅 수행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컨설팅 진행 상황 모니터링 및 표준화	- 지역별로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이 희망하는 영역으로 컨설팅을 확대하여 수행할 수 있음 ● (수행방식) 서비스원에서 분야별 컨설팅 수행 계획을 수립하고, 민간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신청을 받아 컨설팅 수행 - 세무 및 노무 영역 등 전문가가 필요한 경우, 분야별 전문가 위촉 등 외부인력*과 연계하여 컨설팅 제공 * 장기적으로 각 서비스원 내 컨설턴트 양성 추진 - 신청기관은 컨설팅 준비와 관련한 사전자료 확인 및 체크리스트 등을 통하여 보다 효과적인 컨설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집합교육에 의한 컨설팅도 가능 ● (대상기관)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서비스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 되는 기관을 우선적으로 고려 ● 컨설팅 종료 후, 만족도 조사(서식 참고)를 통하여 컨설팅 질 제고	
	나. 대체인력 지원 사업	〈삭제〉	
	가. 시설안전점검 지원사업 ('나'로 위치 이동)	나. 시설안전 컨설팅	12
	4 사업 운영 ● (신청주의) 서비스원의 사업예산을 고려하여 지역 내 안전점검이 필요한 시설을 파악한 후 연간 시설안전점검 규모를 결정하고 대상 기관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안전점검 실시 ● (지원대상) 자체점검 대상 시설 중 영세규모 취약시설 중심 — 지역 내 일정 규모 이하의 영세규모 취약 시설*의 현황을 파악하여 기존 안전점검 현황을 토대로 안전취약 여부 확인	4 사업 운영 ● (지원대상) 서비스원의 사업예산을 고려하여 지역 내 안전컨설팅이 필요한 시설을 파악한 후 연간 시설안전 컨설팅 규모를 결정하고 대상 기관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안전 컨설팅 실시 * 시설의 이용자수, 재정규모, 종사자수 등을 고려하여 자체점검만으로 안전을 확보하기 어려운 시설을 대상으로 하고 그 기준은 지역 서비스원에서 자체적으로 마련	13

구 분	기존 내용	개정 내용	페이지
	* 시설의 이용자 수, 재정규모, 종사자 수 등을 고려하여 자체점 검만으로 안전을 확보하기 어려운 시설을 대상으로 하고 그 기준은 지역 서비스원에서 자체적으로 마련		
	〈신설〉	다. 종사자 교육 ① 개요 ● 민간 사회서비스제공기관 종사자의 역량을 강화 하여 사회서비스 품질을 증진하고, 환경과 정책의 변화에 따른 사회서비스 현장의 대응력을 강화	15
	〈신설〉	② 추진 방향 ● 현업에 도움이 되는 교육을 실시하되, 서비스원 예산 및 지역 여건에 따라 교육의 내용을 직무교육으로 한정하지 않고, 종사자에 대한 역량 강화에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육 범위 확대 가능	15
	〈신설〉	③ 사업 운영 ● (분야) 서비스원 특화, 직무역량 교육, 의무교육, 소진예방 및 정서지원 등 ● (수행방식) 서비스원에서 분야별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필요 시 민간기관의 수요조사 ¹⁾ 를 받아 대상 기관(종사자)을 선정 후 교육 실시 * (방법) 홈페이지 게시, 지역 내 사회서비스 제공시설에 대한 온라인 또는 모바일 설문조사 등 ** 지역 내 기존 교육 기관의 교육내용 검토 후 기능한 중복 되지 않도록 결정 필요 ● (대상)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종사자 및 운영자	15
	제2장 국·공립 시설 등 위탁 운영 가. 기본원칙 ● 서비스원은 소속시설의 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하여 종사자 고용안정, 행정부담 경감, 전 문성 향상 및 이용자에 대한 만족도 제고에 노력해야 함 ● 〈신설〉 ● 〈신설〉	제3장 국·공립 시설 등 위탁 운영 가. 기본원칙 ● 서비스원은 수탁시설의 서비스 품질향상, 행정 부담 경감, 전문성 향상, 이용자에 대한 만족도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함 ● 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원법 제11조에 따라 우선 위탁이 필요한 민간 제공 곤란 및 기피 분야 중심 으로 국·공립 시설(사업) 수탁하는 것이 원칙 이며, 시설 운영이 정상화된 경우 수탁기간 종료 후 민간에 이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 서비스원의 수탁 필요성이 높지 않은 일반 시설· 사업을 기 수탁한 경우 재수탁 지양	19

구 분	기 존 내 용	개 정 내 용	페이지
	나. 대상기관 ● 서비스원은 국가 또는 지자체가 설치하는 ‘국·공립 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아 수행함 - 다만, 아래의 유사한 사업으로 동사운영서 서너지효과가 나타나, 규모의 경제를 도모할 수 있는 사업은 가급적 종합재가센터에서 수행	나. 대상기관 ● 서비스원은 국가 또는 지자체가 설치하는 ‘국·공립 시설*’의 운영 수탁 가능 - 〈삭제 및 위치 이동〉	19
	다. 운영기관 선정 ● (예외적 우선위탁) ⑧ 그 밖에 사업의 공공성, 전문성 등을 고려할 때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우선위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회 서비스 제공기관 또는 사회서비스 사업 * 〈신설〉 - <u>다만 우선위탁 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도 정책위원회 상정 및 심의하되, 해당 내용이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 심의된 경우에는 그것으로 갈음 가능</u> ● 〈신설〉	다. 운영기관 선정(사회서비스원법 제11조) ● (예외적 우선위탁) ⑧ 그 밖에 사업의 공공성, 전문성 등을 고려할 때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우선위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회 서비스 제공기관 또는 사회서비스 사업 * 우선위탁의 필요성은 제1호~제7호에 준하여 판단 필요 ● 우선위탁 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도 정책위원회 상정 및 심의하는 것이 원칙 - 그러나 우선위탁에 응모하기 전, 지역 사회서비스 전문가의 자문을 청취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정책심의위원회를 먼저 거칠 수 있음 (표준운영지침 1 참조) - 해당내용이 사업계획서에 기포함되어 심의된 경우에는 그것으로 갈음 가능 ● 지방자치단체와 시설*에 대한 위·수탁 계약 체결 시, 사회서비스원이 종전 수탁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계약서에 명시 필요 * 특히 위·불법 시설에 대한 위·수탁 계약 체결 시 주의 요망 ※ 영유아보육법 행정처분 승계 관련 법률자문 추가	21
	라. 서비스 품질 관리 ② 종사자 전문성 향상 — 서비스원 원장은 종사자들의 교육·훈련 실적을 승진·전보 등 인사고과에 반영 — 복지부, 지자체는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실적을 서비스원 평가에 반영	라. 서비스 품질 관리 ② 종사자 전문성 향상 - 〈삭제〉	22

구 분	기존 내용	개정 내용	페이지
	마. 기타 관리 및 지원 ● 〈신설〉	마. 기타 관리 및 지원 ● 수탁시설 직원 채용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해당 시설 또는 사업에 대한 운영지침 등에 따름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기간제법') 제4조에 따라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 근로자 사용하되,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는 기간제법 적용이 제외되어 2년을 초과하여 사용 가능 - 형식적으로 위·수탁계약이 반복·갱신되는 경우 사업의 지속성이 예견되어 기간제법이 적용되므로 수탁시설 직원 채용 시 고려 필요 - 근로계약 시 수탁사업 종료에 따른 서비스원과의 고용관계 종료* 및 다른 수탁기관에 고용 승계가능성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는 등 고용 관계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 필요 * 정부위탁사업 수행 중 위탁 기간 만료 전에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우려하여 근로계약 종료, 노사 분쟁 발생 사례가 있으므로 주의 필요 ※ 기간제법에 대한 법률해석 내용 추가	24
	제3장 종합재가센터 운영 가. 기본방향 ● 〈신설〉 ● 서비스 질 개선 도모하기 위해 사회서비스원이 모든 종사자를 직접 채용하고 급급적 월급제 채용 등 종사자 처우 개선 추진 ● 사회서비스원별로 종합재가센터 최소 2개소 설치, 주·야간 보호기관,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통합 운영 시 1개소로 운영 가능	제4장 종합재가센터 운영 가. 기본방향 ● 노인, 장애인, 아동 등 대상별 전 생애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및 연계 ● 서비스 질 개선 도모하기 위해 사회서비스원이 모든 종사자를 직접 채용(정규직, 비정규직 포함), 종사자 역량 강화 개선 ● 지역 내 서비스 개발을 위한 시범사업 운영 및 참여 등을 통한 사회서비스 고도화 지원	29
	나. 운영방향 ㉠ 사업범위 ● 종합재가센터는 <u>긴급돌봄과 방문요양은 필수적으로 수행</u> — 다만, 방문요양을 대체할 노인맞춤돌봄 또는 노인돌봄관련 지자체 특화 사업 등 노인관련	나. 운영방향 ㉠ 사업범위 ● 종합재가센터는 <u>방문요양, 방문목욕, 활동지원 등 2~3개 이상의 서비스 통합 제공 권장</u> - 지역 내 수요와 공급 현황을 고려하여 사업 범위 결정하되, 통합 제공 시 규모의 경제	29

구 분	기 존 내 용	개 정 내 용	페이지
	돌봄 사업 실시할 경우 복지부와 협의하여 방문요양 사업 제외 가능 — 그 외 사업은 지역 내 수요와 공급 현황을 고려하여 사업범위 결정하되, 통합제공 시 규모의 경제 또는 서비스 질 향상이 기대되는 사업 중심으로 우선 연계	또는 서비스 질 향상이 기대되는 사업 중심으로 수행	
	〈참고〉사회서비스바우처제공기관 설치·인력기준 4. 시설·장비 및 인력의 공동이용 가. 제공자가 둘 이상의 사회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는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공통되는 시설·장비를 중복하여 갖추지 않을 수 있고, 제공인력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지역사회서비스의 경우에는 예산의 중복지원 방지 등을 위하여 지역사회서비스 외의 사회서비스의 제공 인력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없다.	〈참고〉사회서비스 바우처 제공기관 설치·인력기준 4. 시설·장비 및 인력의 공동이용 가. 제공자가 둘 이상의 사회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는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공통되는 시설·장비를 중복하여 갖추지 않을 수 있고, 제공인력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다.	32
	③ 종사자 처우 ● (고용형태) 센터에서 수행하는 사업의 성격, 업무량과 각 사업의 지침을 고려하여 채용하되, <u>기급적 필수인력은 월급제 채용토록 권고</u> ● (정년) 서비스원아 직영하는 타 시설과의 형평성을 고려, 정년은 60세로 하되 <u>요양보호사 등 직접 서비스 제공자는 근무평가에 따라 퇴직 후 65세까지 재고용 가능</u> * 다만, 농어촌 지역 등 취약지의 경우 기간제로 재고용 시 65세 이상도 가능 — 또한, 현재 활동 중인 대부분의 요양보호사가 60대 이상인 점을 감안하여 60세 이상인 종사자도 기간제 계약직으로 신규 채용 가능토록 함 ● (기본급) 기급적 지침에 따른 인건바가이드 라인을 준수하되, 사업 겸직 등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상향 지급 가능 — (관리직군) 센터장 및 사회복지사 등 관리직은 사회복지이용시설 인건바 가이드 라인의 5~10호봉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본급으로 설정 — * 예시) 센터장 : 관장 10호봉 전담 관리자 : 사회복지 5호봉	③ 종사자 처우 ● (고용형태) 센터에서 수행하는 사업의 성격, 업무량과 각 사업의 지침을 고려하여 채용 ● 〈삭제〉 ● (급여) 근로 관련 법령, 사회서비스원 자체 규정 등에 따라 최저 임금 이상으로 지급	35

구 분	기존 내용	개정 내용	페이지
	—(월급제 종사자) 최저임금으로 기본 급여 수준을 정하되, ▲이동시간 유급안정, ▲연차 사용사 대체인력 파견, ▲수급자 입원 등으로 인한 서비스 미제공사에도 유급으로 안정 —(시급제 종사자) 민간기관의 시급수준을 감안하여 교통비를 포함하여 최저시급의 108%수준(시급 9,160원+교통비 650원)으로 설정 ● (추가 복리후생) 서비스 손실률 최소화 등의 방법으로 발생하는 잉여금으로 명절휴가비 등 종사자의 복리 후생비용 또는 원거리 등 서비스 사각지대 담당 종사자에 대한 추가 보상비용으로 사용	● <삭제>	
	제4장 긴급돌봄 시범사업 가. 사업개요 ③ 재원 ● 긴급돌봄 예산(총 20억, 국비 50%, 지방비 50%)	제5장 긴급돌봄 한시사업 가. 사업개요 ③ 재원 ● 긴급돌봄 예산(총 14억, 국비 50%, 지방비 50%)	40
	나. 추진체계 ● <신설>	나. 추진체계 ● (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지역 여건에 따라 민간기관 또는 시·도 사회서비스원이 돌봄서비스 제공 가능 *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은 긴급돌봄서비스 제공시간을 기록·관리하며, 대상자와 인접한 지역의 제공기관에서 서비스를 신속히 제공하는 것이 원칙. 대상자에 따라 돌봄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 없음	40
	다. 지원대상자 및 자격 요건 ① 코로나19 긴급돌봄 ● (소득 기준) 없음 ② 코로나19 외 긴급돌봄 ● (소득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u>시범사업 기간까지 자기부담금 미부과하되, 추후 자기부담금 부과 여부 검토</u> - 단, 중위소득 120% 초과자는 전액 자기 부담으로(서간당 10,210원)이용 가능	다. 제공서비스 내용 ① 지원자격 (<u>코로나19, 코로나19외 통합</u>) ● (소득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단, 중위소득 120% 초과자는 전액 자기 부담으로 이용 가능(<u>제공단가 참조</u>)	41

구 분	기존 내용	개정 내용	페이지																		
	● <신설>	② 지원한도 ● 일시적인 위기상황 1회당 최대 72시간(30일 이내)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지자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72시간(30일) 연장 지원 가능 * 최초 서비스 제공일로부터 30일 - 중증 정신질환자 등 고난도 돌봄이 필요하여 제공인력 1인 만으로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경우 2인이 서비스 제공 가능 · 이 경우 비용은 제공인력별로 각각 산정하고 각각의 제공시간을 합산하여 이용시간 차감 * 긴급돌봄 제공 불가 시 일상생활 어려움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정하여 연장하되, 지속적인 돌봄서비스 필요 시 장기요양·활동지원 등 제도화된 서비스 연계	42																		
	마. 인력 채용 및 관리 ③ 근로조건 및 예산 사용 관련 ● (시급) 돌봄서비스 제공 시간당 10,210원 지급 - 그 외 근로기준법에 따른 초과·야간 근무 가산 수당(시급의 50%) 지급 및 4대 보험 가입 등 관계 법령 준수하여 지원 필요 * 가정 내 파견 시 동시간대 다중 돌봄 대상자가 2명인 경우 시간당 +5,100원, 3명 이상인 경우 시간당 +10,210원 지급 ● (위험수당) 제공 시간당 위험수당 6,250원 추가 지급	마. 인력 운영 및 예산 집행 ② 예산 집행 ● (제공 단가) 제공 시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급 하며, 일 최대 8시간까지 제공 가능 ※ '23년 방문요양급여비용 상당 <table border="1"><tr><th>시간</th><th>1h</th><th>2h</th><th>3h</th><th>4h</th><th>5h</th><th>6h</th><th>7h</th><th>8h</th></tr><tr><td>단가 (천원)</td><td>23</td><td>40</td><td>52</td><td>65</td><td>81</td><td>96</td><td>111</td><td>130</td></tr></table> - (가산) 22시 이후 6시 이전 또는 「관광서의 공 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일요일에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위 비용의 30%,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본문에 따른 유급 휴가일 및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50% 가산 청구 가능 -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률을 준수하고, 제공시간 이상의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환수 조치 - 1명의 돌봄종사자가 한 가정 내 2명의 대상자에게 돌봄을 제공할 경우 시간 당 단가의 50% 추가 지급, 3명 이상인 경우 시간 당 단가의 100% 추가 지급 - 급여는 제공단가 안에서 자체 기준 적용하여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 필요 ● (위험수당) <삭제>	시간	1h	2h	3h	4h	5h	6h	7h	8h	단가 (천원)	23	40	52	65	81	96	111	130	44
시간	1h	2h	3h	4h	5h	6h	7h	8h													
단가 (천원)	23	40	52	65	81	96	111	130													

구 분	기 존 내 용	개 정 내 용	페이지
	● (교육수당) 교육 시간당 10,210원 지급 ● (여비) 서비스이용자 실거주지로부터 긴급 돌봄지원단 사무실 또는 돌봄 인력 실거주지 중 가까운 곳을 기준으로 여비 지급 ● (운영비) 인력모집, 교육, 홍보 등 긴급돌봄사업 수행 시 필요한 경비로 활용가능	● (교육수당) 서비스 제공 단가 기준 최대 4시간 (65,000원) 까지 교육수당 지급 가능하며, 추가 교육은 지방비 100% 편성하여 자율적 시행 가능 ● (여비) 서비스이용자가 <u>섬·벽지지역*</u>에 거주할 경우 실거주지로부터 돌봄인력 실거주지까지의 거리를 기준으로 여비 지급 * 「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섬·벽지 지역 고시」별표1에 따른 섬·벽지 지역 ● (운영비) (추가) 서비스 제공내역 관리 시스템 (care.pass.or.kr) 이용료로 활용 가능	
	바. 긴급돌봄인력 안전 확보 방안 ☐ 사전교육 ● (목적) 모집된 긴급돌봄 인력이 현장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안전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사전교육 실시 (최소 4시간 이상 권장) ● (교육내용) 긴급돌봄서비스 이해, 긴급돌봄 서비스 주요 내용, 긴급돌봄서비스 제공 인력의 감염병 예방 및 안전관리 관련 사항 등 ☐ 코로나19 관련 개인정보처리 사용 ●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 대상 (중략)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 지자체용 (제10-3판) ☐ 긴급상황 발생 대응 ● (격리 시 보상) 돌봄 인력이 확진자 또는 자가 격리자 대상 서비스 제공 중 코로나19에 감염 또는 밀접접촉자로 자가격리(수동감시 제외)시 격리 기간(최대 7일) 동안 기본 근무수당(1일 8시간 근무 기준) 지급 * 격리 기간 전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계약 종료일까지 기본근무수당 지급 ** 또한 코로나19 관련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대상인 경우 동 금액을 차감하고 지원	바. 긴급돌봄인력 안전 확보 방안 ☐ 사전교육 ● (목적) 모집된 긴급돌봄 인력이 현장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안전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사전교육 실시 (4시간 권장) ● (교육내용) 긴급돌봄서비스 이해, 긴급돌봄 서비스 주요 내용, 휴대폰 어플 또는 모바일 웹을 이용한 서비스 제공시간 기록 및 관리 방법, 업무 일지 작성방법, 긴급돌봄서비스 제공인력의 감염병 예방 및 안전관리 관련 사항 등 ☐ 코로나19 관련 개인정보처리 사용 ● 확진자 대상 (중략)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 지자체용 (제13-3판) ☐ 긴급상황 발생 대응 ● (격리 시 보상) 돌봄 인력이 확진자 대상 서비스 제공 중 코로나19에 감염 시 격리 권고 기간 (최대 5일) 동안 기본 근무수당(1일 8시간 근무 기준) 지급 * 또한 코로나19 관련 지원 대상인 경우 동 금액을 차감하고 지원 ** 매월 급여비용 청구과정에서 관련 내용 및 증빙서류 첨부하여 지급 요청	45

구 분	기존 내용	개정 내용	페이지
	사. 협조 사항 ☐ 긴급돌봄사업 모니터링 ☒ <신설>	사. 협조 사항 ☐ 긴급돌봄사업 모니터링 ☒ 서비스 제공내역 관리 시스템 사용을 통한 사업 진행 관리 - 휴대폰 어플 또는 모바일 웹을 활용한 서비스 제공시간 기록, 서비스 진행 관리, 모니터링 등	49

CONTENTS

목 차

제1장 사회서비스원 사업 개요	1
가. 추진배경	3
나. 기본방향	3
다. 서비스원 사업범위	4
라. 서비스 유형의 결정	4
마. 사업관리	6
제2장 민간기관 지원사업	7
1. 총칙	9
2. 민간기관 지원사업 주요내용	10
가. 경영 컨설팅	10
나. 시설 안전 컨설팅	12
다. 종사자 교육	15
제3장 국·공립 시설 등 위탁 운영	17
가. 기본원칙	19
나. 대상 기관	19
다. 운영기관 선정	21
라. 서비스 품질 관리	22
마. 기타 관리 및 지원	24
제4장 종합재가센터 운영	27
가. 기본 방향	29
나. 운영 방향	29
다. 운영 시 고려사항	35
제5장 긴급돌봄 한시사업	37
가. 사업개요	39
나. 추진 체계	40
다. 제공서비스 내용	41
라. 서비스 제공 방법	43
마. 인력 운영 및 예산 집행 ※ 현장 상황에 맞게 탄력적 운영	43
바. 긴급돌봄인력 안전 확보 방안	45
사. 협조 사항	49
아. 참고 서식	50

사회서비스원 사업 개요

제1장

- 가. 추진배경
- 나. 기본방향
- 다. 서비스원 사업범위
- 라. 서비스 유형의 결정
- 마. 사업관리

사회서비스원 사업 개요

가. 추진배경

- 인구 고령화, 맞벌이, 1인 가구 증가 등 **사회구조 변화**로 아동·노인 돌봄 등 **사회서비스 수요가 다양하게 분화**하며 증가
 - 이용자 욕구 다양화 및 돌봄 필요 대상 확대에 따라 “더 나은 사회서비스 제공 환경 구축” 필요성 제기
- **다양한 서비스의 개발과 확산**을 위해 **민간협력** 등 시·도 사회서비스원을 포함한 **공공의 역할**을 새롭게 정립하고,
 - 취약계층 대상, 민간기피 분야 등에 대한 돌봄 사각지대 해소와 함께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역량과 의지가 있는 민간분야 지원·육성 필요**

나. 기본방향

- 서비스원을 통해 민관협업을 활성화하고 사회서비스 혁신지원을 강화, 민간 사회서비스 지원 가능 확대

* 국정과제 44 사회서비스 혁신 기반 조성을 통한 복지·돌봄 서비스 고도화

- (목표) 다양한 공급주체가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누구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보편적 복지·돌봄체계로 사회서비스를 혁신
- (주요과제) 사회서비스 혁신을 위한 범부처-민관협업 체계 구축
 - 중앙 및 시·도 사회서비스원을 통한 민관협업 활성화 및 사회서비스 혁신 지원 강화
- 개별 사업(시설운영 및 서비스 제공 등)의 운영은 기본적으로 각 사업별 근거 법령 및 지침,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지침(사회복지시설의 경우) 등에 따름
 - 종사자 직접고용 등 서비스원 소속 시설로서 공공성 향상 및 종사자 처우개선 등을 위해 특별히 준수해야 하는 사항은 본 지침에 근거하여 운영
- 서비스원은 각 사업별 운영지침 및 본 지침에 근거하여 개별사업별 운영 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해야 함

다. 서비스원 사업범위

- **사회서비스원법 제10조에 따른 사업범위를 참고하되, 지역 여건 및 특성을 고려하여 시·도지사가 결정**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등의 발생으로 아동·노인·장애인 등에게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긴급돌봄서비스의 제공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국공립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운영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회서비스 제공 또는 지원에 관한 사업
4. 사회서비스 수급자의 욕구에 따른 종합적인 재가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
5. 사회서비스 제공 및 운영기관에 대한 재무·회계·법무·노무 등에 관한 각종 상담·자문
6.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처우 개선 및 고용 안정성 제고를 위한 사업의 지원
7. 지역 내 사회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한 연구·개발 및 교육사업의 지원
8. 지역 내 사회서비스 수급계획 수립의 지원
9. 새로운 사회서비스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의 실시
10. 그 밖에 시·도지사가 사회서비스 공공성 등의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라. 서비스 유형의 결정

1 기본원칙

- 서비스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유형은 기본적으로 모든 사회서비스를 대상으로 검토 하되, 구체적인 서비스 유형 및 운영시설의 종류는 시·도지사가 지역 여건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

* 사회서비스(Social Services) 개념

- (개념) 개인 또는 사회 전체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회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
 - 공공행정(일반행정, 환경, 안전), 사회복지(보육, 아동·장애인·노인보호), 보건의료(간호, 간병), 교육 (방과 후 활동, 특수교육), 문화 등을 포괄하는 개념
- (법률적 정의)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4호
 - (대상)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 (분야)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 (기능)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지원 등을 통하여,
 - (목적)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

- 서비스원이 새로운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정관에 그 근거를 마련하여야 하며, 정관변경 필요 시 시·도지사 허가 필요
- 사업유형의 무분별한 확대는 지양하고 민간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분야에 집중하여 전문성 함양 및 성공사례 축적 등 도모

2 서비스 유형 선정기준

- 시·도지사는 다음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서비스원의 서비스 유형을 결정함
 - 사회적 수요가 많은 분야, 사업 연계·통합 시 시너지 효과가 큰 분야
 - 사업 규모화가 가능하고 사업규모(이용자, 종사자, 재정) 확대가 예상되는 분야
 - 일자리 처우가 열악하고 서비스 질이 낮아 개선의 필요성이 높은 분야
- 민간이 참여하기 어렵거나 공급 부족한 시설, 임직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위법행위 발생 시설, 그 밖에 취약지에 소재한 시설 등 위탁 운영을 통해 공공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는 시설(사업)에 대한 위탁 운영 고려
 - 다만, 서비스원에서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시설의 무분별한 위탁은 지양하며, 위탁수수료 등을 통한 위탁 운영 경비 확보 필요
 - 위법행위가 발생한 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문제시설을 정상화할 수 있는 지자체의 계획 및 지원 필요
- 그 외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재가의료급여」 등 국가 및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시범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해당 지역의 특화사업 발굴 필요

마. 사업관리

- 서비스원은 매 사업연도 시작 전까지 시·도지사에게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제출하고 승인받아야 함

*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변경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시·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승인받아야 함

- 시·도지사는 시·도 서비스원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승인하기 전에 사업계획서에 포함된 사업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시·도 서비스원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 다만, 시범사업의 경우 연중에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일정·예산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사업계획서에 보건복지부 또는 중앙 사회서비스원에서 공모하는 시범사업 참여를 포괄적으로 포함하여, 시범사업 공모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도록 함

- 서비스원은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작성하고 회계감사를 받아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 시·도 서비스원은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결산서를 각각 승인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관련규정〉「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등의 제출) ① 시·도 서비스원은 제1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사업의 수탁계획을 포함한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매 사업연도 시작 전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시·도 서비스원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승인하기 전에 사업계획서에 포함된 사업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제28조에 따른 시·도 서비스원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시·도 서비스원은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작성하고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을 선정하여 회계감사를 받아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시·도 서비스원은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제3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결산서를 각각 승인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계획서, 예산서 및 결산서의 제출 및 승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민간기관 지원사업

제2장

1. 총칙
2. 민간기관 지원사업 주요내용
 - 가. 경영 컨설팅
 - 나. 시설 안전 컨설팅
 - 다. 종사자 교육

민간기관 지원사업

1

총칙

가. 목적

- 서비스원 관내 민간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하여 경영 컨설팅, 시설 안전 컨설팅, 종사자 교육, 기타 지역 특성을 반영한 특화사업 수행 등 민간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및 종사자에 대한 지원을 통해 사회서비스 품질의 전반적 제고와 서비스 이용자 삶의 질 향상을 도모

나. 기본원칙

- 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 역량을 효과적으로 강화하여 사회서비스의 제공 효과성을 제고하고 이용자의 만족도를 제고함으로써 사회서비스 공공성을 실현
- 아울러 역량있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을 발굴하고, 성장을 촉진하고 규모화하여 전반적인 사회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한 노력 지속 추진
- 지침에 제시된 경영 컨설팅, 시설 안전 컨설팅, 종사자 교육 외에도 지역 내 수요를 반영한 지역 특화 민간 지원사업 운영 가능

다. 대상기관

- 서비스원은 사업 역량이 취약한 기관에 대한 지원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경우에 따라 우수사례 확산이 가능한 역량 있는 민간기관을 우선 지원할 수 있음
 - 영세 소규모시설은 신청 절차를 수행할 인력 부족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서비스원이 선제적으로 지원 대상 기관을 발굴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함
 - * 지역 여건, 지원 사업의 성격에 따라 대상기관 기준을 정하여 운영

2 민간기관 지원사업 주요내용

가. 경영 컨설팅

1 개요

- 서비스원의 다양한 운영 노하우를 공유하고 민간기관이 서비스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함으로써, 서비스의 전반적인 질을 높이고 역량을 강화함

2 추진 방향

- 정부평가와 연계되는 컨설팅 및 회계, 인사·노무 등의 운영능력을 향상시켜 서비스 질 제고와 연계가 가능한 컨설팅 실시

3 사업 운영

- (분야) 법률, 재무회계, 인사·노무, 홍보, 경영기법, 개인정보 보호, 서비스 전략 등
 - 경영기법, 인사·노무, 재무회계, 법률 등에 대한 컨설팅을 통해 실질적인 경영실적 향상으로 연계되도록 노력
- * 상술한 컨설팅 분야를 사서원이 모두 수행할 필요는 없으며, 예산 및 인력의 상황에 따라 분야를 정함
- 지역별로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이 희망하는 영역으로 컨설팅을 확대하여 수행할 수 있음

참 고 컨설팅 대상 및 내용 예시

- (경영기법) 전문 경영능력 배양, 비전제시, 가치공유 등 기관경영에 대한 마인드 코칭
- (재무회계) 재무회계 규칙 및 시설 회계처리 기법 등 컨설팅
- (인사노무) 시설별 인사·노무 현황 및 미흡 사항에 대한 컨설팅 진행
- (품질평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품질평가 결과 미흡 바우처 제공기관에 대한 사후 컨설팅

- (수행방식) 서비스원에서 분야별 컨설팅 수행계획을 수립하고, 민간 사회서비스 제공 기관의 신청을 받아 컨설팅 수행
 - 세무 및 노무 영역 등 전문가가 필요한 경우, 분야별 전문가 위촉 등 외부인력*과 연계하여 컨설팅 제공
 - * 장기적으로 각 서비스원 내 컨설턴트 양성 추진
 - 신청기관은 컨설팅 준비와 관련한 사전자료 확인 및 체크리스트 등을 통하여 보다 효과적인 컨설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집합교육에 의한 컨설팅도 가능
- (대상기관)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서비스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관을 우선적으로 고려
- 컨설팅 종료 후, 만족도 조사(16p 서식 참고)를 통하여 컨설팅 질 제고

나. 시설 안전 컨설팅

1 개요

- 민간 제공기관에 대하여 체계적인 안전 컨설팅을 지원함으로써 시설 이용자·생활자·종사자의 안전 확보
- 안전 컨설팅 전문인력 지원을 통해 자체점검에 따른 전문성 부족문제를 개선하고 상시적이고 체계적인 안전 컨설팅 실시

2 법적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 4(시설의 안전점검 등)

- ① 시설의 장은 시설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시설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정기 또는 수시 안전점검을 한 후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결과를 받은 후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의 운영자에게 시설의 보완 또는 개수(改修)·보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설의 운영자는 요구에 따라야 한다.
- 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점검, 시설의 보완 및 개수·보수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기 또는 수시 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시설의 범위, 안전점검 시기, 안전점검기관 및 그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현 황

- (수행개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 4에 의하여 하·동절기(5월 및 11월)마다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시행
 - 시설 자체점검, 지자체 확인점검, 민관합동점검의 형태로 수행

〈시설안전 점검 방식〉

구분	점검주체	점검대상
시설 자체점검	시설물 관리주체 (시설장)	점검대상에 포함된 모든 사회복지시설 자체점검표 작성
지자체 확인점검	지방자체단체 (시설담당공무원)	자체 점검 대상시설의 15% 이상
민관합동점검	민관합동점검단 (복지부, 지자체공무원, 전문가(전기, 가스, 소방))	복지부, 지자체, 전문가(전기, 가스, 소방, 시설물) 협의하여 대상시설 선정

* 사회복지시설 중 어린이집은 보육담당부서에서 별도계획에 따라 실시

4 사업 운영

- (지원대상) 서비스원의 사업예산을 고려하여 지역 내 안전 컨설팅이 필요한 시설을 파악한 후 연간 시설안전 컨설팅 규모를 결정하고 대상 기관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안전 컨설팅 실시
 - * 시설의 이용자 수, 재정규모, 종사자 수 등을 고려하여 자체점검만으로 안전을 확보하기 어려운 시설을 대상으로 하고 그 기준은 지역 서비스원에서 자체적으로 마련
- (지원방법) ▲ 서비스원 소속의 안전 컨설팅 인력 직접투입 ▲ 외부전문가를 활용하여 안전 컨설팅을 실시하고 그 비용을 지원
 - ⇒ 서비스원의 예산규모, 사업 특성, 지역별 특성,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안전 컨설팅 방식을 자체적으로 결정하여 수행
 - (직접고용) 서비스원 본부 인력 중 일정 인원을 안전관련 자격소지자 또는 경력자를 채용하여 사업 수행
 - (전문가 활용) 안전 컨설팅 수요가 적을 경우에는 외부전문가를 활용하여 컨설팅을 실시하고 그 경비를 서비스원이 지원
- (컨설팅 사항) 시설안전관리 및 소방, 건축, 가스, 전기 등 시설안전 집중 컨설팅하되 지역별·시기별(하절기/동절기) 특성을 고려하여 컨설팅 사항을 추가 또는 생략 가능

〈안전 컨설팅 항목 예시〉

주요 컨설팅 분야	주요 컨설팅 항목
1. 안전관리계획 / 안전관리자/ 안전교육	시설안전관리계획 수립, 안전관리자 지정, 안전교육훈련 실시 등
2. 책임보험 가입 여부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 가입 여부 및 보장 한도 등 점검
3. 소방/전기/가스 안전 관리	소화기 및 소화 설비, 자동화재탐지 설비, 피난유도등 및 피난기구, 출입통제구역, 전기/가스 안전관리, 피난로 확보, 방화문, 제연/배연설비 설치 및 작동 여부, 방염물품 사용 여부
4. 급식위생안전관리	식재료 가공시설 관리, 식수/폐기물 관리
5. 자연재난안전관리	풍수해 대비 상태(건물누수, 옹벽 균열여부, 지반침하 등) 혹서기 대비 상태(냉방시설 확보 현황, 실외기 관리상태)
6. 컨설팅 결과 모니터링	동절기 점검결과에 대한 조치여부 등 확인

- (컨설팅 분야 확대) 기존 시행 중인 안전 컨설팅 분야 및 항목에 더하여 기후 변화, 시설 유형별 특성 등 다양한 조건을 고려한 안전 컨설팅 분야 및 항목 확대
- (결과활용) 결과 통보 및 환류, 권고조치, 안전점검 지도(地圖) 구축 등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안전 점검 매뉴얼 표준화

다. 종사자 교육

1 개요

- 민간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종사자의 역량을 강화하여 사회서비스 품질을 증진하고, 환경과 정책의 변화에 따른 사회서비스 현장의 대응력을 강화

2 추진 방향

- 현업에 도움이 되는 교육을 실시하되, 서비스원 예산 및 지역 여건에 따라 교육의 내용을 직무교육으로 한정하지 않고, 종사자에 대한 역량 강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육 범위 확대 가능

3 사업 운영

- (분야) 서비스원 특화, 직무역량 교육, 의무교육, 소진예방 및 정서지원 등
- (수행방식) 서비스원에서 분야별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필요 시 민간기관의 수요조사*를 받아 대상 기관(종사자)을 선정 후 교육 실시

* (방법) 홈페이지 게시, 지역 내 사회서비스 제공시설에 대한 온라인 또는 모바일 설문조사 등

** 지역 내 기존 교육 기관의 교육내용 검토 후 가능한 중복되지 않도록 결정 필요

- (대상)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종사자 및 운영자

(서식) 사회서비스원 민간지원사업 만족도 조사표(안)

	조사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 귀 기관에서 요청한 (민간지원사업명)은 원활하게 진행되었습니까?				
2	• 사업 수행 간 서비스원 담당자와의 소통은 원활하였습니까?				
3	• 귀 기관의 필요에 맞는 (민간지원사업명)이 적절하게 제공되었습니까?				
4	• 귀 기관에 제공된 (민간지원사업명) 수행 인력(업체)은 전문적이었습니까?				
5	• 귀 기관에 제공된 (민간지원사업명) 제공 시간 또는 방법은 효과적이었습니까?				
6	• (민간지원사업명)을 통해 귀 기관의 문제가 해결되었거나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까?				
7	• 향후 필요 시 00서비스원이 제공하는 (민간지원사업명)을 계속 이용할 의향이 있습니까?				
8	• 00서비스원의 (민간지원사업명)을 타 시설(기관)에 추천할 의향이 있습니까?				
9	• 00서비스원의 (민간지원사업명)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합니까?				
10	• 00서비스원의 (민간지원사업명)에 대한 기타 의견이 있으면 자유롭게 작성 부탁드립니다.	자유 기입			
응답자 정보					
※ 소속 기관(시설) • 생활시설() • 이용시설() • 기타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 기관(시설) 분야 • 아동·청소년() • 노인() • 장애인() • 여성·가족() • 기타()		※ 기관(시설) 운영주체 • 사회복지법인() • 사단법인() • 재단법인() • 개인() • 기타()	
※ 기관(시설) 종사자 현황 • 종사자 수 ()명 * 현원 기준		※ 기관(시설) 사업 수행 시기 • ()년()월 * 사업자등록증 최초 발급 기준		※ 기관(시설) 소재 건축물 준공 시기 • ()년()월 * 안전 컨설팅 신청 기관(시설)만 작성	

국·공립 시설 등 위탁 운영

제3장

- 가. 기본원칙
- 나. 대상 기관
- 다. 운영기관 선정
- 라. 서비스 품질 관리
- 마. 기타 관리 및 지원

국·공립 시설 등 위탁 운영

이 지침에서 별도로 정한 사항 이외의 내용은 개별 사업에서 정한 기준 및 절차를 적용함

가. 기본원칙

- 서비스원은 수탁시설의 서비스 품질향상, 행정부담 경감, 전문성 향상, 이용자에 대한 만족도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함
- 서비스원은 재정운영의 효율성, 투명성, 규모화 등을 통해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 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원법 제11조에 따라 우선 위탁이 필요한 민간 제공 곤란 및 기피 분야 중심으로 국·공립 시설(사업) 수탁하는 것이 원칙이며, 시설 운영이 정상화된 경우 위탁기간 종료 후 민간에 이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 서비스원의 수탁 필요성이 높지 않은 일반 시설·사업을 기 수탁한 경우 재수탁 지양

나. 대상 기관

- 서비스원은 국가 또는 지자체가 설치하는 ‘국·공립 시설’^{*}의 운영 수탁 가능

* 「사회복지사업법」 상 사회복지시설, 정부위탁 사업 등 기타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포함

〈관련규정〉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시·도 서비스원의 사업) ① 시·도 서비스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국공립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운영

〈사회복지시설 종류〉

소관 부처	시설종류	세부종류		관련법
		생활시설	이용시설	
보건 복지부	노인복지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일자리지원기관	「노인복지법」
	복합노인복지시설	◦농어촌에 지역에 한해 「노인복지법」 제31조 노인 복지시설을 종합적으로 배치한 복합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 가능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아동복지시설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자립지원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지역아동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가정위탁지원센터 ◦자립지원전담기관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영유아 거주시설 ◦장애인단기 거주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 ◦피해장애인쉼터 ◦피해장애아동쉼터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의료재활시설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장애인복지법」
	어린이집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
	정신건강증진시설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중 생활시설	◦정신재활시설 중 이용시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노숙인시설	◦노숙인자활시설 ◦노숙인재활시설 ◦노숙인요양시설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노숙인일시보호시설 ◦노숙인급식시설 ◦노숙인진료시설 ◦쫓방상담소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관		◦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업법」
	지역자활센터		◦지역자활센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다함께돌봄센터		◦다함께돌봄센터 (학교돌봄터 포함)	「아동복지법」
질병 관리청	결핵·한센시설	◦결핵·한센시설		「사회복지사업법」
여성 가족부	성매매피해지원시설	◦일반지원시설 ◦청소년지원시설 ◦외국인지원시설 ◦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	◦자활지원센터 ◦성매매피해상담소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피해보호시설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보호시설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가정폭력상담소 ◦긴급전화센터디지털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모자가족복지시설 (기본, 공동, 자립) ◦부자가족복지시설 (기본, 공동, 자립)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기본, 공동) ◦일시지원복지시설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한부모가족지원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법」
	건강가정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건강가정기본법」
	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치료재활센터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청소년복지 지원법」

다. 운영기관 선정 (사회서비스원법 제11조)

● **(공개경쟁 원칙)**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서비스 사업 또는 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공개경쟁의 방법을 통하여 해당 사업을 위탁하는 것이 원칙

● **(예외적 우선위탁)**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 또는 사업에 대하여는 시·도 서비스원에 우선 위탁할 수 있음

- ① 민간이 참여하기 어렵거나 공급이 부족한 분야에 신규로 설립하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 ② 사회서비스를 받는 자나 사회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폭력·성폭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법행위로 임직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 ③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 또는 그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 ④ 법 제10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사업을 지원하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또는 사회서비스 사업
- ⑤ 「도서·벽지 교육진흥법」에 따른 도서·벽지 소재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또는 그 지역 거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서비스 사업
- ⑥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른 사회 보장 특별지원구역 소재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또는 그 지역 거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서비스 사업
- ⑦ 아동·노인·장애인 등의 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상담 및 교육 등을 지원하는 사회 서비스 사업 또는 그 사업을 실시하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 ⑧ 그 밖에 사업의 공공성, 전문성 등을 고려할 때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우선위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또는 사회서비스 사업

* 우선위탁의 필요성은 제1호~제7호에 준하여 판단 필요

● **우선위탁 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도 정책위원회 상정 및 심의하는 것이 원칙**

- 그러나 우선위탁에 응모하기 전 지역 사회서비스 전문가의 자문을 청취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정책심의위원회를 먼저 거칠 수 있음(표준운영지침 I 참조)
- 해당 내용이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 심의된 경우에는 그것으로 같음 가능

- 지방자치단체와 시설*에 대한 위·수탁 계약체결 시, 사회서비스원이 종전 수탁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계약서에 명시 필요

* 특히 위·불법 시설에 대한 위·수탁 계약체결 시 주의 요망

✳ (참고) 영유아보육법 행정처분 승계 관련 법률 자문

- 사회서비스원의 어린이집 위탁 운영이 영유아보육법상 행정처분 승계 사유인 양도, 사망, 합병에 해당하지 않음
 - 영유아보육법 제45조의3에 규정하고 있는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사유는 어린이집의 양도, 설치·운영자의 사망 또는 법인 합병이라 할 것이고 이러한 승계 사유 발생 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가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존속 법인에 승계되도록 하는 것임
 - 시·도 사회서비스원이 사회서비스원법 제11조제2항제2호에 따라 사회서비스제공기관의 운영 또는 사업을 위탁받은 경우 위에서 말하는 ‘양도, 설치·운영자의 사망 또는 법인 합병’에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행정제재 처분 효과의 승계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함

라. 서비스 품질 관리

1 기본방향

- 서비스원 수탁시설은 공공성 및 서비스 품질 향상을 우선 고려하여야 하며, 종사자전문성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함

2 종사자 전문성 향상

- 서비스원은 서비스 분야, 서비스 이용자, 종사자 특성 등을 고려하여 종사자들에 대한 다양하고 전문적인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할 수 있음

* (서비스 분야) 보육, 요양, 돌봄 등, (이용자) 영유아, 아동, 노인, 장애인, 노숙인 등
(종사자) 경력, 직역, 종사자 지위(시설장, 직원) 등

- 또한 서비스원은 종사자들의 자질향상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 이용자 인권보호, 재무회계, 조직화합, 심층 직무교육 등을 실시·지원할 수 있음

- 특히 신규자(시설장, 직원)의 경우 실무 배치 전에 충분한 사전교육을 실시

- 서비스원은 서비스 유형 및 수탁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종사자들의 업무 매뉴얼을 마련하고 종사자들이 이를 숙지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함

3 안전관리 등

- 서비스원은 안전, 위생 등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서비스 유형 및 시설 특성 등을 고려하여 관련 매뉴얼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함
 - 또한 수탁시설에서 이를 자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안전, 위생 등과 관련한 점검표를 마련하고 이를 활용하도록 함
- 서비스원은 안전, 위생, 이용자 건강 등과 관련한 자문 또는 협력기관을 구성하여 필요시 서비스원 본부 및 수탁시설 등에서 이를 활용하도록 함

4 이용자 만족도 제고

- 서비스원은 수탁시설 이용자와의 온·오프라인 소통채널을 마련하여 이용자들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서비스 개선에 반영하도록 노력함
- 서비스 유형 및 이용자 특성 등을 고려한 서비스 매뉴얼 제작·보급 가능
 - * 육아종합지원센터 등과 같이 이용자 교육프로그램 제공기관이 있는 경우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

5 서비스 품질향상 지원

- 서비스원이 위·불법 시설 또는 평가 저조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경우, 해당 시설의 운영방식 개선방안을 마련·추진하여야 함
 - 서비스원은 해당시설의 재정 건전성, 서비스 질 향상, 종사자 처우개선, 이용자 만족도 개선 등을 위한 운영방식 개선계획을 마련하고 시·도지사에 보고함
- 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운영 경험 등을 토대로 지역 내 해당 사업 분야의 서비스 표준화 방안, 표준운영모델 개발 연구 등을 수행함

마. 기타 관리 및 지원

- 서비스원은 수탁시설들의 매 사업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에 대해 수탁 시설장과 협의 하여 작성함
 - 서비스원은 수탁시설들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토대로 서비스원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 및 복지부 장관에 보고함
 - 서비스원은 독립된 감사부서(상설 또는 비상설)를 통해 수탁시설의 회계처리 및 노동 관계 법령 준수 여부 등을 상시적·정기적으로 점검함
 - 서비스원은 수탁시설에서 각종 사건·사고 및 법률분쟁 발생 시 권한 및 책임소재 등을 고려하여 법률자문, 소송대응 등을 직접 수행 또는 지원함
 - 서비스원은 수탁시설의 사업운영, 회계, 직원관리, 서비스 질 향상 등 수탁시설 운영의 공공성, 투명성, 전문성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지도·관리함
 - 수탁시설 직원 채용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해당 시설 또는 사업에 대한 운영지침 등에 따름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제4조에 따라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 근로자 사용하되,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는 기간제법 적용이 제외되어 2년을 초과하여 사용 가능
 - 형식적으로 위·수탁계약이 반복·갱신되는 경우 사업의 지속성이 예견되어 기간제법이 적용되므로 수탁시설 직원 채용 시 고려 필요
 - 근로계약 시 수탁사업 종료에 따른 서비스원과의 고용관계 종료* 및 다른 수탁기관에 고용 승계 가능성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는 등 고용관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 필요
- * 정부위탁사업 수행 중 위탁 기간 만료 전에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우려하여 근로계약 종료, 노사 분쟁 발생 사례가 있으므로 주의 필요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관련 판례 (대법원 2017.2.3. 선고 2016다 255910)

-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예외적인 사유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란 건설공사, 특정 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 등과 같이 객관적으로 일정 기간 후 종료될 것이 명백한 사업 또는 특정한 업무에 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업 또는 업무가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까지로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를 의미

✱ 법 적용 관련 고용노동부 회신내용 (고용차별개선과-1901, '23.7.16.)

- 위·수탁 사업의 **종기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어 한시적으로 수행**하면서,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위·수탁 계약이 체결되는 등 재수탁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으로 보아 **기간제법 적용 제외 대상에 해당**
 - *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위·수탁계약이 반복·갱신되어 사실상 계속사업으로 볼 수 있거나 평가를 통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위탁되어 사업의 지속성이 예견될 수 있는 경우는 한시적이거나 일회적으로 보기 어려움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치를 기다릴 것 없이 당연히 종료됨
- 그러나 기간제법 적용제외에 해당하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 만료에도 일정 요건 충족 시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 당사자간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음
- 이때,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는지는 단순히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횟수만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판단해야 함
- 한편,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더라도 사용자는 ‘합리적 이유’가 있으면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으며**, 합리적 이유의 유무는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갱신 거부 사유와 절차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합리적이며 공정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그러한 사정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함**

종합재가센터 운영

제4장

가. 기본 방향

나. 운영 방향

다. 운영 시 고려사항

종합재가센터 운영

이 지침에서 별도로 정한 사항 이외의 내용은 개별 사업에서 정한 기준 및 절차를 적용함

가. 기본 방향

- 방문요양·장애인 활동지원 등 유사한 성격의 돌봄 사업을 각각의 제공기관이 아닌 한 개의 기관에서 수급자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통합·연계하여 제공
- 노인, 장애인, 아동 등 대상별 전 생애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및 연계
- 서비스 질 개선 도모하기 위해 사회서비스원이 모든 종사자를 직접 채용(정규직, 비정규직 포함), 종사자 역량 강화
- 사회서비스원은 정부 재정이 투입된 공공기관인 만큼 고난도 사례 등 민간기관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사례 적극 수행
- 지역 내 서비스 개발을 위한 시범사업 운영 및 참여 등을 통한 사회서비스 고도화 지원

나. 운영 방향

1 사업 범위

- 방문요양, 방문목욕, 활동지원 등 2~3개 이상의 서비스 통합 제공 권장
- 지역 내 수요와 공급 현황을 고려하여 사업범위 결정하되, 통합 제공 시 규모의 경제 또는 서비스 질 향상이 기대되는 사업 중심으로 수행

* 종합재가센터 사업범위 예시

- 재가노인복지시설(주·야간 보호, 단기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및 노인맞춤돌봄 등 사업 대상이 유사하여 시너지 효과가 나는 사업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아이돌봄지원사업,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등 바우처 제공기관으로 동시 운영 시 규모의 경제를 도모할 수 있는 사업
- 지역사회 통합돌봄, 통합재가급여, 기타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시범사업 등 기존 종합재가센터의 사업과 연계 시 효과가 높은 사업

2 제공기관 설치 및 인력 기준

- 제공기관 설치 관련 **개별 법령 및 사업지침에 따라 시설 및 인력 기준을 갖추어** 사업장 소재지 시·군·구에 사업별 각각의 제공기관으로 지정·등록

-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 「노인복지법」 제39조에 따라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신고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아야 함

* 종전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설치하고 사업장 소재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한 기관은 제3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유효기간(6년) 동안 지정된 장기요양기관으로 봄

-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등록)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및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라 사회서비스 별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 또는 지정요청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제공자의 등록기준) 개정으로 지역사회 서비스의 경우에도 제공인력 공동활용 가능

- 종합재가센터가 다수의 사회서비스를 종합하여 제공하는 기관이므로 개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인력 겸직 규정 및 시설·장비 병용 규정을 적용하여 설치

참고 재가노인복지시설 겸직·병용 규정

병설·운영 유형	겸직 및 시설 공동사용
▶ 재가급여사업을 사회복지시설과 병설운영	▶ 시설장 겸직가능 (방문간호 포함 시 관리책임자는 간호사여야 함)
▶ 재가급여사업의 관리책임자가 어느 하나 이상의 재가급여를 동시에 관리하는 경우	▶ 시설장 겸직가능 (방문간호 포함 시 관리책임자는 간호사여야 함)
▶ 요양시설에서 방문요양사업을 병설하는 경우	▶ 당해 요양시설에 배치된 요양보호사의 수가 최근 3개월 동안 법정 배치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그 평균초과인력이 방문요양의 요양보호사 겸직 가능
▶ 하나의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방문요양과 방문목욕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	▶ 요양보호사 1급 상호 겸직 가능
▶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이 어느 하나 이상의 재가급여를 동시에 제공하는 경우	▶ 중복되는 시설·설비 공용가능(생활실, 침실 제외)

참고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9)

5. 하나의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여러 가지 재가노인복지서비스(복지용구지원서비스는 제외한다)를 함께 제공하는 경우의 특례
 - 가. 시설 및 설비기준에 관한 특례(재가노인지원서비스 제외):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 하나 이상의 다른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경우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생활실, 침실 외의 시설은 병용할 수 있다.
 - 나. 인력기준에 관한 특례
 - 1)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장이 하나 이상의 다른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경우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다른 서비스의 시설장을 겸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의료기관(보건진료소를 제외한다)이 아닌 재가노인복지시설 또는 보건진료소가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2년 이상의 간호업무경력이 있는 간호사로서 해당 시설에 상근하는 자를 시설장으로 한다.
 - 2) 방문요양서비스와 방문목욕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의 요양보호사 1급은 상호 겸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3) 주·야간보호서비스 또는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 방문요양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는 방문요양의 요양보호사는 10명 이상(농어촌지역의 경우: 5명 이상)으로 할 수 있고, 방문요양의 요양보호사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다.
 - 4) 주·야간보호서비스와 단기보호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는 상호 겸직하도록 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사회복지사는 이용자 50명당 1명,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는 이용자 30명당 1명,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는 이용자 30명 이상일 경우 1명을 배치하여야 한다.
 - 5) 주·야간보호서비스와 단기보호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4호가목에 해당 하는 요양보호사 및 조리원을 각각 두되, 요양보호사 및 조리원을 주·야간보호 서비스와 단기보호서비스 상호간에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다.
 - 6) 주·야간보호서비스와 단기보호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경우 각 서비스 이용자 수의 합이 25명 미만인 때에는 조리원을 겸직하도록 하여 운영할 수 있다.
6. 재가노인복지서비스(복지용구지원서비스는 제외한다)를 제공하는 시설을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는 경우의 특례
 - 가. 시설 및 설비기준에 관한 특례
 - 1) 방문요양, 방문목욕 또는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시설을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여 운영하는 경우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상호 중복되는 시설·설비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료기관(보건진료소를 제외한다)이 아닌 재가노인복지시설 또는 보건진료소가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2년 이상의 간호업무경력이 있는 간호사로서 해당 시설에 상근하는 자를 시설장으로 한다.

- 2) 주·야간보호 또는 단기보호를 제공하는 시설을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생활실, 침실 외의 시설은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병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시설의 연면적은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의 면적을 포함하여 각각 90제곱미터 이상이 되어야 한다.

나. 인력기준에 관한 특례

- 1) 재가노인복지서비스(재가노인지원서비스 제외)를 제공하는 시설을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여 운영하는 경우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재가노인복지서비스 제공시설의 장을 겸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의료기관(보건진료소를 제외한다)이 아닌 재가노인복지시설 또는 보건진료소가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2년 이상의 간호업무경력이 있는 간호사로서 해당 시설에 상근하는 자를 시설장으로 한다.
- 2) 주·야간보호서비스 또는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를 겸직하도록 할 수 있다.
- 3) 주·야간보호서비스 또는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제4호가목에 해당하는 조리원을 두되, 해당 조리원과 사회복지시설의 조리원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다.
- 4) 주·야간보호서비스 또는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여 운영하는 경우 각 시설 이용자 수의 합이 25명 미만인 때에는 조리원을 겸직하도록 하여 운영할 수 있다.

 참고 사회서비스 바우처 제공기관 설치·인력 기준(사회서비스이용권법 시행규칙 별표1)

4. 시설·장비 및 인력의 공동이용

- 가. 제공자가 둘 이상의 사회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는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공통되는 시설·장비를 중복하여 갖추지 않을 수 있고, 제공인력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다.
- 나. 제공자의 시설을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공통되는 시설·장비를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참고 활동지원기관 시설 및 인력 기준(장애인활동법 시행규칙 별표1의2)

다. 시설 및 인력의 공동이용

- 1) 활동보조를 제공하는 활동지원기관을 「장애인복지법」 제54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자립생활 지원센터, 같은 법 제59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등(이하 "사회복지시설등"이라 한다)에 병설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관리책임자는 사회복지시설등에 필요한 인력을 겸직할 수 있고, 공통되는 시설 및 설비는 중복하여 갖추지 않을 수 있다.
- 2) 농어촌 지역에서 활동보조를 제공하는 활동지원기관을 사회복지시설등에 병설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전담관리인력은 사회복지시설등에 필요한 인력을 겸직할 수 있다.

참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 권리·의무 변화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재가기관 설치 규정이 삭제('19.12.12. 시행), 종전 제32조제1항에 따라 설치·신고한 재가장기요양기관은 「노인복지법」에 따라 재가노인복지시설로 설치 신고하면 사회복지시설에 해당하게 됨

① 노인복지시설(사회복지시설)이 될 경우 발생하는 권리

- ① 재가노인복지시설로서 다른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함께 제공할 경우 시설장 겸직 가능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 별표 9)
- ② 기관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에 대한 경력 100% 인정 가능(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지침)
- ③ 시설, 주야간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의 경우 기능보강비 수령 가능
(노인요양시설 확충 기능보강사업 지침)
- 법인은 모두* 가능, 개인 설립 기관은 화재안전창문만 지원
*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시설 신축, 치매전담형 시설 증개축·개보수 지원, 이용자·입소자 증원, 안전을 위한 증개축·개보수 지원, 증원에 따른 장비보강(물리치료 장비, 사무, 주방 장비 등)
- ④ 그 외 ¹⁾전기요금 복지할인 이용(한국전력공사 전기공급약관), ²⁾수돗물 요금 할인 이용(수도법 제38조제3항), ³⁾도서정가제에도 불구하고 저렴하게 도서 구입(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2조), ⁴⁾정보통신업체로부터 정보통신물품 후원(국가정보화기본법 시행령 제33조), ⁵⁾가정폭력상담소 등과 병합 설치·운영(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등 가능

② 노인복지시설(사회복지시설)이 될 경우 추가되는 의무

- ① 화재·안전사고에 대한 책임보험 가입(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3)
- ② 시설장* 및 종사자 결격사유** 적용(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 제35의2)
 - * 아동학대·유기·성폭력, 사회복지시설 임원에서 해임된 날부터 5년 이내인 자, 설립허가가 취소된 법인의 임원이었던 자로 취소에 책임이 있고 취소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부당행위로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관련 공무원으로 일했던 사람으로 퇴직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 아동학대·유기·성폭력·횡령·배임, 국가·지자체 보조금 부정수급자
- ③ 정기·수시 안전 점검 후 시·군·구에 결과 제출 및 시군구의 시설 보완·개수·보수 요구에 따라야 함(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4)
- ④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 시설운영계획 수립·평가, 종사자 근무환경 개선, 종사자와 이용자 권익보호, 지역사회 협력 등 관련 내용 논의를 위해 설치
- ⑤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기준 준수(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0)
 - ¹⁾종사자에 대한 연 1회 이상 건강검진 실시, ²⁾운영규정을 작성하여 시·군·구 제출, ³⁾시설 관련 장부·서류 비치 등
 - 위반 시 2차까지 경고, 3차 사업정지 7일, 4차 사업 폐지
- ⑥ 기타 법에 따른 의무
 - ¹⁾복지·보건 관련 위기 상황* 인지 시 신고 의무, ²⁾전기설비의 정기점검 실시(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5조의2), ³⁾시설 내 금연(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 ⁴⁾시설 이용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국민안전교육진흥기본법 제13조), ⁵⁾정기적 안전점검 실시(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9조)
 - * 감염병 발생, 긴급지원대상자 발견, 발달장애인에 대한 유기 발견, 사회보장급여를 필요로 하는 지원대상자 발견, 아동 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경우 등

③ 기타

○ 재무회계규칙

- 이전에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만 재무회계규칙이 있었으나, '18.5.30부터 장기요양 기관에 대해서도 재무회계규칙 도입
- 재무회계규칙 내용은 상호 유사하나, 재가장기요양기관이 제출해야 할 서류가 사회복지 시설보다 더 간소화되어 있음
- * 예산총칙, 이사회 회의록 사본, 기본재산수입명세서, 사업 수입명세서, 감사보고서, 법인세 신고서 제출 의무 없음

3 종사자 처우

- (채용) 사회서비스원법 제22조에 따라 서비스원은 종합재가센터 직원을 직접 채용
 - (센터장) 근무지별로 공개 모집하되, 센터장은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및 질 관리 측면에서 전문성과 경험을 요구하는 매우 중요한 직위이므로 경력경쟁을 통한 채용 가능
 - (일반 종사자) 원칙적으로 사회서비스원 본부에서 공개모집을 통해 채용하되, 종합재가센터 내 사업에 대해 기간제 근로자 채용 시 센터장에게 채용 사무 위임 가능
- (고용형태) 센터에서 수행하는 사업의 성격, 업무량과 각 사업의 지침을 고려하여 채용
- (급여) 근로 관련 법령, 사회서비스원 자체 규정 등에 따라 최저 임금 이상으로 지급

다. 운영 시 고려사항

1 서비스 품질관리

- 서비스원은 종합재가센터 종사자 적정 업무배치와 순환, 직무교육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지원
- 사전에 수급자 욕구에 기반 케어플랜을 작성하여 종사자 및 보호자에게 제공, 케어플랜에 따라 서비스 제공
- 서비스 표준화 및 질 향상을 위한 종사자·보호자 교육 실시

2 초기 운영자금 확보

- 설립초기 수급자 및 종사자 모집에 시일이 소요
 - 초기 적자를 최소화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종사자 및 수급자 모집 계획 수립 필요
 - 서비스 청구 및 지불 시기 등을 고려 사회서비스원 본부 운영비에서 집행 등 초기 운영자금 마련 방안 검토

3 배상책임보험의 가입

- 센터장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의 급여제공 시 발생 가능한 수급자의 상해 등에 대비, 법률상 배상하여야 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에 가입

* 사회복지사업법 상 보험가입 의무(제34조의3)

제34조의3(보험가입 의무) ① 시설의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손해보험회사의 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의 책임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1.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2. 화재 외의 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보호대상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긴급돌봄 한시사업

제5장

- 가. 사업개요
- 나. 추진 체계
- 다. 제공서비스 내용
- 라. 서비스 제공 방법
- 마. 인력 운영 및 예산 집행
- 바. 긴급돌봄인력 안전 확보 방안
- 사. 협조 사항
- 아. 참고 서식

긴급돌봄 한시사업

가. 사업개요

① 사업 목적

- ① 기존 돌봄서비스로 해결 불가능한 돌봄 사각지대 해소
 - 돌봄 공백이 발생했으나 기존 서비스를 적시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 서비스 연계 등 공백 해소까지 단기간 서비스 제공
- ② 돌봄서비스 중단 등 코로나19로 발생한 돌봄 공백 해소
 - 본인 또는 보호자의 확진으로 기존 돌봄서비스 중단, 종사자 확진으로 시설 내 돌봄 인력 부족

② 추진 근거

-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시·도 서비스 원의 사업) 및 제12조(긴급돌봄지원단의 구성)

제10조(시·도 서비스원의 사업) ① 시·도 서비스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등의 발생으로 아동·노인·장애인 등에게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긴급돌봄서비스의 제공**

* 가. 자연재난 :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나. 사회재난 :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화생방사고·환경 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

제12조(긴급돌봄지원단의 구성) ① 제10조제1항제1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시·도 서비스원에 **긴급돌봄지원단을 둘 수 있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긴급돌봄지원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3 자원

- 긴급돌봄 예산 (총 14억, 국비 50%, 지방비 50%)

* '2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보조사업 적기 시행을 위하여 “성립전 예산” 제도를 활용하여 사업 추진 가능

- 필요시 지방비·민간재원(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으로 사업 확대 가능

나. 추진 체계 ※ 현장의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적용 가능

- (복지부, 중앙사회서비스원) 긴급돌봄 총괄, 지침 및 교육자료 배포, 시도별 긴급돌봄 추진현황 모니터링 등

- (지자체) 읍면동 및 시군구는 긴급돌봄 대상자 발굴 및 연계, 시·도는 예산 및 사업관리

- 긴급돌봄 신청은 읍·면·동, 시·군·구(보건소 등) 등 공적 전달체계, 민간시설 등 여러 창구 통해 발굴 및 접수 가능

- 의뢰기관은 서식1 작성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자격확인통보서, 주민등록등본과 함께 긴급돌봄지원단에 의뢰(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및 차상위계층확인서 등으로 갈음 가능)

- 긴급돌봄지원단: 지자체(또는 위탁기관) 내 긴급돌봄지원단을 구성하여 긴급돌봄 대상자 선정·상담, 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매칭 또는 긴급돌봄 인력 관리

* 사회서비스원에 위탁하는 경우 사회서비스원 본부 또는 종합재가센터에서 긴급돌봄지원단 운영 가능

- 긴급돌봄지원단 내 “대상자 선정위원회*” 구성(서비스원 미설립 시 시·도 등 지자체 내 구성) 하여 사전에 지원 적정 여부 검토

* 긴급한 경우 서면 또는 내부 사례회의 등으로 절차 간소화 가능

- (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지역 여건에 따라 민간기관 또는 시·도 사회서비스원이 돌봄서비스 제공 가능

*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은 긴급돌봄서비스 제공시간을 기록·관리하며, 대상자와 인접한 지역의 제공기관에서 서비스를 신속히 제공하는 것이 원칙. 대상자에 따라 돌봄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 없음

다. 제공서비스 내용

1 지원 자격

- (지원원칙) ①갑작 또는 일시적으로 발생(발견)한 돌봄 공백에 대해 ②기존 돌봄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경우 ③일시적으로 재가 돌봄서비스, 가사지원, 일상생활지원 등 틈새 돌봄 제공
 - (① 긴급성·일시성) 질병·사고 등 갑작스러운 위기사례 발생(발굴)으로, 대상자에게 즉시 돌봄이 필요한 경우를 대상
 - (② 보충성) 지원 당시 장기요양, 활동지원, 노인맞춤돌봄 등 기존 제도권 서비스를 적시에 받을 수 없는 대상자 선정 필요*
 - (③ 한시적) 일시적인 돌봄 공백 해소 또는 타 돌봄 서비스 연계 전까지 단기적으로 서비스 제공

* 해당 지역에 기존 제도권 서비스 제공기관이 없는 경우 포함

* 긴급돌봄 한시사업 대상 (예시)

- 갑작스런 질병(수술)·사고, 일시적 신체 기능 저하로 긴급하게 재가·이동지원 등 돌봄서비스가 필요하나 가족 또는 부양의무자가 돌봄을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
- 활동지원·장기요양 판정 등 기존 제도권 서비스 대상자 선정 대기 시 단기적으로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 노인맞춤돌봄, 장기요양 등 지속적 돌봄 필요는 없으나 긴급한 돌봄 수요가 있는 독거노인, 노인부부 등
-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하나 보호자의 코로나19 확진으로 가정 내 돌봐줄 사람이 부재한 경우 가정 내 돌봄 인력지원
- 종사자의 확진 등으로 사회복지시설 내 돌봄 인력 공백이 생긴 경우 돌봄 인력지원
 - * 장기요양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은 인건비 중복 지급되지 않도록 유념
- 기타 위기 사유로 인해 긴급한 돌봄이 필요하다고 시·도지사 등(위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대상자 선정위원회 구성 또는 내부 회의 등 통해 결정)

- (소득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대상자 선정위원회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되, 수요가 많을 시 중위소득 120% 이외 자체적 우선순위 적용 가능
 - 단, 중위소득 120% 초과자는 전액 자기부담으로 이용 가능

2 지원한도

- 일시적인 위기 상황 1회당 최대 72시간(30일 이내*)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지자체장(위탁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내부 회의 등을 통해 72시간(30일) 연장 지원 가능

* 최초 서비스 제공일로부터 30일

- 중증 정신질환자 등 고난도 돌봄이 필요하여 제공인력 1인만으로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경우 2인이 서비스 제공 가능

- 이 경우 비용은 제공인력별로 각각 산정하고 각각의 제공시간을 합산하여 이용 시간 차감

* 긴급돌봄 제공 불가 시 일상생활 어려움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정하여 연장하되, 지속적인 돌봄 서비스 필요 시 장기요양·활동지원 등 제도화된 서비스 연계

3 선정 절차

- 긴급돌봄 대상자 선정 시 사전에 대상자 선정위원회(내부 위원으로 구성 및 서면·비대면 방식 회의 가능)를 거쳐 지원 적정 여부 검토

- 긴급돌봄 특성상 서비스 제공 전 소득 기준 등 확인이 어려울 경우 서비스 우선 제공 후 사후조사 통해 지원 적정성 판단 가능

* 대상자 선정위원회를 통해 소득 기준 초과하더라도 지원 필요성, 긴급성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성 여부 결정 가능

** 담당자의 고의·중과실, 신청인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를 제외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지원의 적정성 인정 및 환수 생략

* 고의 또는 중과실, 거짓 또는 부당사례

- **(고의·중과실)** 지원조건으로 금품을 수수한 경우, 신청자가 고의로 소득·재산을 은닉한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경우, 사실관계를 전혀 확인하지 않고 지원한 경우 등
- **(거짓 또는 부당사례)** 의도적인 거짓으로 위기상황을 꾸며 선지원 받은 경우,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등

라. 서비스 제공 방법

1 코로나19 긴급돌봄

- 긴급돌봄인력의 건강·안전을 위해 보호장비(마스크, 위생장갑, 일회용 방호복 등) 필수적 제공
- 확진 시 격리 권고 기간 등을 고려하여 최대 5일을 원칙으로 하되,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3일 연장 가능
 - * 지자체는 긴급돌봄서비스 종료 후 이용자의 돌봄공백 여부를 확인하여 필요자원 연계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확진 등에 따른 인력지원은 대체인력지원센터 인력 파견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긴급돌봄 인력지원

2 코로나 19외 긴급돌봄

- 재가, 이동지원, 주거, 식사 및 안부확인 등 대상자의 욕구에 따라 돌봄서비스 제공
- 최대 72시간(1일 최대 8시간, 30일)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지자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72시간(30일) 연장 지원 가능
 - * 긴급돌봄 제공 불가 시 일상생활 어려움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정하여 연장하되, 지속적인 돌봄서비스 필요 시 장기요양·활동지원 등 제도화된 서비스 연계

마. 인력 운영 및 예산 집행 ※ 현장 상황에 맞게 탄력적 운영

1 인력 운영

- (기본원칙) 긴급상황 발생 시 즉각 투입이 가능하도록 운영
 - * (주의사항) 긴급돌봄을 위해 채용된 인력은 기간제로 탄력적 운용이 불가피한 상황이나,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준수 필요
- 돌봄자격증 소지자(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활동지원사, 보육교사 등) 우선 선발 하되, 긴급상황 고려하여 유사 자격증 소지자도 가능
 - * 장애인 대상 긴급돌봄 제공 시 즉시 지원가능한 활동지원사가 없을 경우 당사자 또는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요양보호사 등 다른 돌봄 인력을 대신 지원하는 등 돌봄공백을 최소화하도록 노력

- 기존 돌봄서비스 제공기관(민간 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종합재가센터, 대체인력 지원센터 등) 내 돌봄 인력을 긴급돌봄 인력으로 활용 권고
- 사회서비스원과 업무 협약 등을 통해 민간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을 긴급돌봄서비스 제공기관으로 활용 가능
- 종사자에게 근로조건(근무기간, 근무유형, 근무장소, 급여 등) 안내 및 동의 확보, 사전교육 필요
- ☞ 서식2 (긴급돌봄지원단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서식6 (긴급돌봄지원단 근로조건 안내 및 동의서)

2 예산 집행

- (제공 단가) 제공 시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급하며, 일 최대 8시간까지 제공 가능

※ '23년 방문요양급여비용 상당

시간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	6시간	7시간	8시간
단가	23,000원	40,000원	52,000원	65,000원	81,000원	96,000원	111,000원	130,000원

- (가산) 22시 이후 06시 이전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일요일에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위 비용의 30%,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본문에 따른 유급휴가일 및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50% 가산 청구 가능
-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률을 준수하고, 제공시간 이상의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환수 조치
- 1명의 돌봄종사자가 한 가정 내 2명의 대상자에게 돌봄을 제공할 경우 시간 당 단가의 50% 추가 지급, 3명 이상인 경우 시간 당 단가의 100% 추가 지급
- 급여는 제공단가 안에서 자체 기준 적용하여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 필요
- (청구 절차) 서비스 제공 이후 월 단위로 지자체장(위탁기관의 장)에게 청구
 - 근무일지와 관리시스템 증빙자료 첨부하여 서비스 시간에 대한 제공 단가 청구

- (교육 수당) 서비스 제공 단가 기준 최대 4시간(65,000원) 까지 교육수당 지급 가능하며, 추가 교육은 지방비 100% 편성하여 자율적 시행 가능

* 사전교육 수료자에게만 지급(첫 회만 지급)

- (여비) 서비스이용자가 섬·벽지지역*에 거주할 경우 실거주지로부터 돌봄인력 실거주지까지의 거리를 기준으로 여비 지급

* 「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섬·벽지지역 고시」별표1에 따른 섬·벽지 지역(62p 참고)

〈원거리 수당 지급기준〉

거리	5km 이상 10km 미만	10km 이상 15km 미만	15km 이상 20km 미만	20km 이상 25km 미만	25km 이상 30km 미만	30km 이상 35km 미만	35km 이상
금액	3,400원	5,100원	6,800원	8,500원	10,200원	11,900원	13,600원

- (운영비) 인력모집, 교육, 홍보, 서비스 제공내역 관리 시스템
(care.pass.or.kr) 이용료 등 돌봄 사업수행 시 필요한 경비로 활용 가능

〈긴급돌봄 사전교육〉

- 돌봄인력의 제공 서비스 대상·유형 등에 대한 사전 교육을 통해 긴급돌봄서비스 투입에 대한 이해도 제고

* (교육내용) 방역 수칙, 돌봄 대상자 식사·화장실 지원 등 밀접 신체수발방법, 안전관리 등 교육

바. 긴급돌봄인력 안전 확보 방안

□ 사전 교육

- (목적) 모집된 긴급돌봄 인력이 현장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안전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사전교육 실시 (4시간 권장)
- (교육 내용) 긴급돌봄서비스 이해, 긴급돌봄서비스 주요 내용, 휴대폰 어플 또는 모바일 웹을 이용한 서비스 제공시간 기록 및 관리 방법, 업무일지 작성방법, 긴급돌봄서비스 제공인력의 감염병 예방 및 안전관리 관련 사항 등

〈예시〉 긴급돌봄서비스 제공인력 사전 교육 내용

교육명	교육내용
오리엔테이션 (1H)	• 돌봄인력 OT
공통교육 (4H)	• 긴급돌봄서비스 사업소개 • 긴급돌봄서비스 전달체계 현황 – 긴급돌봄서비스 수급자 – 긴급돌봄서비스 제공자 • 역할과 직무내용 • 코로나19 방역수칙 – 감염예방(소독, 위생관리 등) • 업무일지 작성, 서비스 제공시간 기록 등
직무교육 (3H)	• 돌봄인력의 역할과 책임 • 비상연락체계, 서비스 제공 진행 절차 • 돌봄대상자 사례관리 – 돌봄대상자 사정 – 돌봄대상자 일상생활관리 강화(식사지원, 영양관리 등) – 돌봄대상자 안전(낙상, 욕창 예방활동, 기도 막힘 예방 및 대처 등) – 돌봄대상자 개인위생 • 돌봄인력의 안전 및 자기관리
실습교육 (1H)	• 방호복·방호장갑 등 이용 방법 실습 • 체위변경, 이동 도움 등 실습 •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등 실습

□ 코로나19 관련 개인보호구 사용

- 확진자 대상 서비스 제공 시 중앙사고수습본부 지침*의 선별진료소 진료·간호 또는 확진/의심환자 병실출입·진료·간호 등에 준하여 사용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 지자체용 (제13-3판)

- 〈참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상황별 개인보호구(예시)

구분	상황, 행위	개인보호구▶					
		호흡기 보호			전신 보호		눈 보호
		수술용 마스크	KF94 동급의 호흡기 보호구	전동식 호흡기 보호구	일회용 장갑	일회용 방수성 긴팔가운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
선별 진료소	선별진료소 접수, 안내		●		●	●	
	선별진료소 진료, 간호		●		●	●	●
이송	이송(구급차 운전자)1)		●		●		
	확진/의심 환자 이송(검역관, 보건소직원, 응급구조사 등)		●		●	●	●
	의심환자 동승 보호자	●					
진료	확진/의심환자 병실출입, 진료, 간호 등**		●		●	●	●
	에어로졸 생성 처치2)		● (선택 사용 가능)		●	●	●
	검사(X-ray 등 영상의학검사)		●		●	●	●
	호흡기 검체 채취		●		●	●	●
검체 관리	검체 취급(실험실, 검사실 등)3)4)		●		●	●	●
	검체 이송(파손없이 포장된 검체)	●			●		
장례	시신 접촉		●		●	●	
	시신백 이송, 관 운구	●			●		
청소·소독	청소·소독5)		●		●	●	●
폐기물	의료폐기물 포장, 취급		●		●	●	●
	의료폐기물 운반	●			●	●	

※ 개인보호구 선택 시 참고사항

- 일회용 가운, 고글(안면보호구)은 혈액, 체액, 분비물 및 배설물 접촉이 가능하거나, 될 수 있는 상황에서 점막·피부 보호 및 의복 오염을 막기 위해 착용한다.

(출처) CDC's Core Infection Prevention and Control Practices for Safe Healthcare Delivery in All Settings
<https://www.cdc.gov/infectioncontrol/guidelines/core-practices/index.html>

- * 확진/의심환자 병실 출입, 진료, 간호 등 : 환자와의 접촉이 없거나 에어로졸 생성 처치가 없는 진료 및 간호 등은 [감염관리 전문가] 또는 [감염관리위원회] 등 기관 내 감염관리 부서에서 논의한 후 개인보호구 수준을 결정할 수 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9-86호, 의약외품 범위 지정에 따른 수술용 마스크로 제한.

- 1) 구급차 운전석이 차폐되어 있지 않거나 의심환자 또는 확진환자 접촉의 기회가 있을 경우 전신보호복(덧신포함), KF94 등급 이상의 호흡기보호구, 장갑(필요 시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 추가) 착용
- 2) 에어로졸이 생성되는 처치는 기관삽관(endotracheal intubation), 심폐소생술, 기관지내시경술, 기도 분비물 흡인, 기관관리(tracheostomy care), 사체부검, 비침습적 양압환기(Continuous positive air pressure), 분무요법(nebulizer therapy), 가래배출 유도의 처치, 상황, 행위를 말함
- 3) 검체 취급 실험실·검사실에서 개인보호구 선택, 사용, 관리에 관한 사항은 「실험실 생물안전지침」(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생물안전평가과)에 따름
- 4) ClassII급의 생물안전작업대 작업 시 가운(긴팔), 일회용 장갑 착용
 Lee H, Ki C-S, Sung H, et al. Guidelines for the Laboratory Diagnosis of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Coronavirus in Korea. Infection & chemotherapy. 2016;48(1):61-69.)
- 5) 병실, 구급차 등 청소·소독 시에 해당하며, 상황에 따라 방수성 앞치마 등 착용

● <참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상황별 개인보호구(예시)

- 긴팔가운을 포함한 4종(KF94 등급 이상의 호흡기 보호구, 장갑, 방수성 긴팔가운,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 사용

□ 긴급상황 발생 대응

● 긴급돌봄서비스 제공 중 긴급상황 발생 시 즉시 보고해야 함

- **코로나19 의심증상 발현 시** 긴급돌봄지원단 혹은 근무지(사회복지시설, 요양시설 등) 담당자에게 즉각 연락 후 근무배제, 코로나19 검사 시행
- 사회서비스원 즉시보고, 유관기관 전파(관할 지자체 등) 대응
- 판정결과 '음성' 시 현업복귀하며, 대체 돌봄인력 투입가능 시 즉시 투입
- 판정결과 '양성' 시 보건당국 보고 및 병원이송(119), 치료지원

- **(치료지원)** 긴급돌봄서비스 제공인력 양성 확진 발생 시에는 치료지원
 - 긴급연락처 통한 보호자 연락(가족)
 - 보호자(가족)와 협의 통한 치료 계획 협조
 - 산재신청과 산재요양급여 신청 등 필요 시 해당 절차 행정처리(소속기관 협조)
- **(치료 후 지원)** 사회서비스원은 안정적인 현업 복귀를 위한 다양한 방안 강구
 - 사회서비스원에서는 치료이후 필요 시 병가제도 활용 등을 통한 현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
 - 심리적 안정을 위한 돌봄인력의 힐링프로그램* 등을 정기적으로 운영하는 등의 사후관리 지원

* 코로나19 대응 돌봄인력 대상 소진관리 프로그램 참여(국가트라우마센터)
- **(격리 시 보상)** 돌봄 인력이 확진자 대상 서비스 제공 중 코로나19에 감염 시 격리 권고 기간(최대 5일) 동안 기본 근무수당(1일 8시간 근무 기준) 지급

* 코로나19 관련 지원 대상인 경우 동 금액을 차감하고 지원

** 매월 급여비용 청구과정에서 관련 내용 및 증빙서류 첨부하여 지급 요청

사. 협조 사항

□ 긴급돌봄사업 모니터링

- 원활한 사업추진 및 관리를 위해 복지부 (중앙사회서비스원) - 시도 (사회서비스원) 영상회의 등을 통한 **의견수렴 등 모니터링 계획** (필요시)
- 시도 사회서비스원은 **긴급돌봄사업 추진현황 및 실적**을 작성하여 복지부 (중앙사회서비스원) 및 시도에 제출 (월 1회, ~12월까지)

☞ 사회서비스원 긴급돌봄지원단 운영 현황 조사 - 별도 송부
- 서비스 제공내역 관리 시스템 사용을 통한 사업 진행 관리
 - 휴대폰 어플 또는 모바일 웹을 활용한 서비스 제공시간 기록, 서비스 진행 관리, 모니터링 등

아. 참고 서식

(서식1) 긴급돌봄서비스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긴급돌봄서비스 신청서			
돌봄 이용자 성명 /시설명		생년월일 /사업자번호		성별	
주소		전화번호	(주택) (핸드폰)		
보호자(신청인) /시설장(신청인)		이용대상자와의 관계			
의뢰장소	☐ 자가 ☐ 복지시설 () ☐ 기타()		구분	코로나19 ☐	코로나19외 ☐
소득수준	☐ 수급권자 ☐ 조건부수급권자 ☐ 차상위 ☐ 중위소득 120% 이하 ☐ 중위소득 120% 초과				
의료보장형태	☐ 의료급여1종 ☐ 의료급여2종 ☐ 지역의료보험 ☐ 직장의료보험 ☐ 기타				
장기요양등급		장애정도			
현재 타 돌봄 서비스 이용여부	☐ 이용하지 않음 ☐ 이용()				
동거상태	☐ 독거 ☐ 부부 ☐ 자녀동거 ☐ 조손가정 ☐ 기타				
의뢰사유 및 내용	1. 전반적 상황 (돌봄가족 유무, 지역사회자원 등)				
	2. 의뢰사유 (코로나19, 위기사유 등 구체적으로 작성)				
상기인을 ○○○사회서비스원에 긴급돌봄지원서비스 이용자로 신청합니다. 신청자 성명(인): (인) 신청자 소속: 신청자 연락처: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이용 동의서

성 명	
생년월일	
수집하는 개인정보항목	- 성명, 주소, 연락처, 생년월일 등 긴급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제반 사항 - 성별, 나이, 서비스 제공 내용, 소득 기준 등 긴급돌봄 시범사업 분석을 위해 필요한 사항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제공받는자) 정부기관, 사회서비스원, 긴급돌봄한시사업 수행기관,케어비지트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 ○○○사회서비스원 긴급돌봄서비스 제공 대상자 선정을 위한 조회·확인 (신원조회 포함) - 긴급돌봄 시범사업 분석을 위한 사례 분석 등 연구 수행, 만족도 조사 등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일로부터 개인정보의 수집·제공·이용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개인정보 제공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1.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2.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긴급돌봄서비스 이용 신청접수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는 긴급돌봄 서비스 제공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본인은 위의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성 명: (서명)

※ 반드시 본인 자필 서명 후 제출 바랍니다.

(서식2) 긴급돌봄지원단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긴급돌봄지원단 신청서		
서비스 가능영역 (복수응답가능)	☐ 재가서비스 ☐ 복지시설 ☐ 기타()	
서비스 가능영역	☐ () <i>*서비스가능시간 작성 예) 09시~18시, 18:00~24:00 등</i>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서비스 가능대상 (복수응답가능)	☐ 노인 ☐ 장애인 ☐ 아동 ☐ 영유아 ☐ 기타 ()	
코로나19 확진자 대상 서비스 제공	☐ 가능 ☐ 불가능	
주요 경력		
시설(기관)명	근무기간	활동내역
자격증명	취득일	발급처
상기인은 ○○○사회서비스원의 긴급돌봄지원단으로서 신청하며, 위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신청자 : (서명)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이용 동의서

성명	
생년월일	
수집하는 개인정보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경력, 자격사항 등 인력관리에 필요한 제반 사항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제공받는자) 정부기관, 사회서비스원, 긴급돌봄한시사업 수행기관, 케어비지트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사회서비스원 긴급돌봄지원단 인력관리를 위한 자격·경력·결격사유 등 조회·확인 (신원조회 포함)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일로부터 개인정보의 수집·제공·이용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개인정보 제공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1.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2.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희망자 모집 접수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는 긴급돌봄지원단 희망자 모집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본인은 위의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성명: (서명)

※ 반드시 본인 자필 서명 후 제출 바랍니다.

(서식3) 긴급돌봄 인력 투입 전 확인사항 (체크리스트)

긴급돌봄인력 투입 전 확인사항 (체크리스트)

구 분	O, X
○ 돌봄서비스 제공 전에 긴급돌봄 인력에게 긴급돌봄서비스의 주요 내용, 감염병 예방 안전교육,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지침 등 교육을 실시하였는가?	
○ 배치 시 기존 경력 등을 고려하여 업무 배치하였는가?	
○ 서비스 제공 전 발열, 기침, 콧물 등 의심 증상이 없는가?	
○ 긴급돌봄 인력의 건강관리, 방역물품 제공 등 생활지원 담당자는 지정되었는가?	
○ 긴급돌봄 인력에 대한 근로계약서는 작성되었는가?	
○ 비상시를 대비하여 긴급돌봄 인력의 비상연락망(친구, 동료 등)을 확보하였는가?	
○ 돌봄인력에게 돌봄서비스 제공 모니터링을 위한 시스템 활용 방법, 근무일지 작성 등을 안내하였는가?	

(서식4) 기관 파견용 업무일지

긴급돌봄지원단 근무일지 (기관파견용)

소속	〇〇사회서비스원 긴급돌봄지원단 〇〇종합재가센터			이름	
근무일자	근무시각	실근무시간	지원내용	근무자 확인	담당자 확인
(예시) 10.01.(월)	9:00~12:00	3시간	가사간병, 돌봄서비스지원	0	0

※ 반드시 (근무자/담당자) 자필 서명 후 제출 바랍니다.

근무내역 (횟수)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	6시간:	7시간:	8시간:

30%가산내역 (횟수)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	6시간:	7시간:	8시간:

50%가산내역 (횟수)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	6시간:	7시간:	8시간:

담당자: 〇 〇 〇

(서식5) 방문서비스용 근무일지

긴급돌봄지원단 근무일지 (방문서비스용)

소속	○○사회서비스원 긴급돌봄지원단 ○○종합재가센터			이름	
근무일자	근무시각	실근무시간	지원내용	이용자 확인	근무자 확인
(예시) 10.01.(월)	9:00~12:00	3시간	가사간병, 돌봄서비스지원	○	○

※ 반드시 (이용자/근무자) 자필 서명 후 제출 바랍니다.

근무내역 (회수)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	6시간:	7시간:	8시간:

30%가산내역 (회수)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	6시간:	7시간:	8시간:

50%가산내역 (회수)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	6시간:	7시간:	8시간:

담당자: ○○○

(서식6) 긴급돌봄지원단 근로조건 안내 및 동의서**긴급돌봄지원단 근로조건 안내 및 동의서(안)**

※ 현장 상황에 맞게 변경 가능

□ 근로조건**1. 근무기간 및 근로시간**

- 근무기간 : ~ 매일 (토, 일 포함) 근무
- 근무시간 : 근무형태 별 상이
- 근무내용: 재가, 이동지원, 주거, 식사, 안부확인 등 긴급돌봄 대상자의 욕구에 따른 돌봄서비스 제공

2. 근무장소

- 대상자의 자택, 긴급돌봄을 요청한 사회복지시설

3. 임금

- 긴급돌봄 한시사업 지침에 따른 제공 단가 내에서 기관 자체 기준 적용하여 지급
(지방자치단체 별로 필요 시 지방비 추가 편성 가능)
- 연장, 휴일, 야간 근무 발생 시 법정 가산수당 지급

위 사항에 대하여 안내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소속기관:

성 명: (서명)

(서식7) 비용 지급 청구서

긴급돌봄 한시사업 비용 지급청구서

급여(서비스)	인원: 10명			
대상자	성명: 홍길동, 김철수,.....			
서비스 제공기관	기관명:			
	사업자번호:			
	전화번호:			
	주소:			
당월 청구금액: 금1,000,000원(금일백만원)				
제공내용	금액	횟수	청구금액(지급금액)	
1시간	23,000	회	원	
2시간	40,000	회	원	
3시간	52,000	회	원	
4시간	65,000	회	원	
5시간	81,000	회	원	
6시간	96,000	회	원	
7시간	111,000	회	원	
8시간	130,000	회	원	
소 계			원	
금액	30% 가산 금액	횟수	청구금액(지급금액)	
1시간	6,900	회	원	
2시간	12,000	회	원	
3시간	15,600	회	원	
4시간	19,500	회	원	
5시간	24,300	회	원	
6시간	28,800	회	원	
7시간	33,300	회	원	
8시간	39,000	회	원	
소 계			원	
금액	50% 가산 금액	횟수	청구금액(지급금액)	
1시간	11,500	회	원	
2시간	20,000	회	원	
3시간	26,000	회	원	
4시간	32,500	회	원	
5시간	40,500	회	원	
6시간	48,000	회	원	
7시간	55,500	회	원	
8시간	65,000	회	원	
소 계			원	
수령기관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사업자등록번호

우리 기관은 긴급돌봄 한시사업 대상자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위와 같이 제공단가 지급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정보

성명

(서명 또는 인)

서비스 제공기관(청구기관) 과의 관계

(서식8) 비용 지급 통보서

긴급돌봄 한시사업 비용 지급통보서

급여(서비스)	인원: 10명			
대상자	성명: 홍길동, 김철수,.....			
서비스 제공기관	기관명:			
	사업자번호:			
	전화번호:			
	주소:			
당월 지급금액: 금1,000,000원(금일백만원)				
제공내용	금액	횟수	청구금액(지급금액)	
1시간	23,000	회	원	
2시간	40,000	회	원	
3시간	52,000	회	원	
4시간	65,000	회	원	
5시간	81,000	회	원	
6시간	96,000	회	원	
7시간	111,000	회	원	
8시간	130,000	회	원	
소 계			원	
금액	30% 가산 금액	횟수	청구금액(지급금액)	
1시간	6,900	회	원	
2시간	12,000	회	원	
3시간	15,600	회	원	
4시간	19,500	회	원	
5시간	24,300	회	원	
6시간	28,800	회	원	
7시간	33,300	회	원	
8시간	39,000	회	원	
소 계			원	
금액	50% 가산 금액	횟수	청구금액(지급금액)	
1시간	11,500	회	원	
2시간	20,000	회	원	
3시간	26,000	회	원	
4시간	32,500	회	원	
5시간	40,500	회	원	
6시간	48,000	회	원	
7시간	55,500	회	원	
8시간	65,000	회	원	
소 계			원	
수령기관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사업자등록번호

00사회서비스원은 위 서비스 제공기관에 위와 같이 제공단가를 지급합니다.

년 월 일

○○사회서비스원

(서명 또는 인)

(서식9) 본인부담금 청구서(중위소득 120% 초과자)

긴급돌봄 한시사업 비용 지급청구서

① 급여(서비스)	인원:
대상자	성명:
② 서비스 제공기관	기관명:
	사업자번호:
	전화번호:
	주소:

제공내용	금액	횟수	청구금액 (지급금액)
1시간	23,000	회	원
2시간	40,000	회	원
3시간	52,000	회	원
4시간	65,000	회	원
5시간	81,000	회	원
6시간	96,000	회	원
7시간	111,000	회	원
8시간	130,000	회	원
소 계			원

제공내용	30% 가산금액	횟수	청구금액 (지급금액)
1시간	6,900	회	원
2시간	12,000	회	원
3시간	15,600	회	원
4시간	19,500	회	원
5시간	24,300	회	원
6시간	28,800	회	원
7시간	33,300	회	원
8시간	39,000	회	원
소 계			원

제공내용	50% 가산금액	횟수	청구금액 (지급금액)
1시간	11,500	회	원
2시간	20,000	회	원
3시간	26,000	회	원
4시간	32,500	회	원
5시간	40,500	회	원
6시간	48,000	회	원
7시간	55,500	회	원
8시간	65,000	회	원
소 계			원

⑨ 수령기관	⑩ 금융기관명	⑪ 계좌번호	⑫ 예금주	⑬ 사업자등록번호

우리 기관은 중위소득 120% 초과 대상자에 대한 긴급돌봄 한시사업 대상자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위와 같이 제공
단가 지급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⑭ 청구인 정보

성명

(서명 또는 인)

서비스 제공기관(청구기관) 과의 관계

(참고) 「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섬·벽지지역 고시」

[별표 1] 가족요양비 지급 섬·벽지지역

□ 섬 지역

시도	시군구	읍면동	대상지역(섬)
경기	안산시	풍도동	육도, 풍도
	화성시	우정읍	국화도, 입파도
경남	거제시	둔덕면	화도
		사등면	고개도
		일운면	내도, 외도, 지심도
		장목면	이수도
	고성군	삼산면	와도
		하일면	자란도
	남해군	미조면	조도, 호도
		상주면	노도
	사천시	동서동	마도, 신도, 신수도, 저도
		서포면	월등도, 진도
	진주시	판문동	귀곡도
	창원시	구산면	실리도
		웅천동	우도
		진동면	송도, 수우도, 양도
		충무동	잠도
	통영시	광도면	입도, 저도
		도산면	연도, 읍도
		사랑면	상도, 수우도, 하도
		산양읍	곤리도, 만지도, 송도, 연대도, 오곡도, 오비도, 저도, 추도, 학림도
		욕지면	갈도, 국도, 납도, 두미도, 봉도, 상노대도, 연화도, 욕지본도, 우도, 초도, 하노대도
		용남면	수도, 어의도, 지도
		한산면	가왕도, 매물도, 비산도, 비진도, 소매물도, 용초도, 장사도, 좌도, 죽도, 추봉도, 한산본도
	하동군	금남면	대도
경북	울릉군	울릉읍, 서면, 북면	독도, 울릉도, 죽도

시도	시군구	읍면동	대상지역(섬)
인천	강화군	삼산면	미법도, 서검도
		서도면	말도, 볼음도, 아차도, 주문도
	서구	신현원창동	세어도
	옹진군	대청면	대청도, 소청도
		덕적면	굴업도, 덕적도, 문갑도, 백아도, 소야도, 울도, 지도
		백령면	백령도
		북도면	모도, 시도, 신도, 장봉도
		연평면	대연평도, 소연평도
		자월면	대이작도, 소이작도, 승봉도, 자월도
전남	고흥군	과역면	미덕도, 진지도
		금산면	연흥도
		남양면	우도
		도양읍	득량도, 상화도, 시산도, 하화도
		도화면	죽도
		봉래면	수락도, 쑥섬
		포두면	침도
	목포시	유달동	달리도, 외달도, 울도
	무안군	망운면	탄도
		해제면	저도
	보성군	벌교읍	장도, 지주도, 해도
	신안군	도초면	도초도, 동소우이도, 서소우이도, 우이도, 죽도
		비금면	비금도, 상수치도, 하수치도
		신의면	고사도, 기도, 신의도, 평사도
		안좌면	박지도, 반월도, 사치도, 요령도
		암태면	당사도, 초란도
		압해읍	가란도, 고이도, 노대도, 대식도, 마산도, 매화도, 소식도, 외안도, 장마도, 황마도, 효지도
		임자면	부남도, 재원도
		장산면	마진도, 막금도, 백야도, 울도, 장산도
		증도면	대기점도, 병풍도, 소기점도, 소악도, 화도
		지도읍	대포작도, 선도, 소포작도, 어의도, 울도
		하의면	개도, 능산도, 대야도, 문병도, 신도, 옥도, 장병도, 장재도, 하의도
		흑산면	가거도, 다물도, 대둔도, 만재도, 상태도, 영산도, 장도, 중태도, 하태도, 흥도, 흑산도

시도	시군구	읍면동	대상지역(섬)
	여주시	남 면	금오도, 나발도, 대두라도, 대횡간도, 부도, 소두라도, 소횡간도, 수향도, 안도, 연도
		돌산읍	송도
		삼산면	거문도, 광도, 동도, 서도, 소거문도, 손죽도, 초도, 평도
		삼일동	삼간도
		월호동	대경도, 소경도, 야도
		울촌면	대늑도, 소늑도, 송도
		화양면	운두도
		화정면	개도, 대여자도, 사도, 상화도, 소여자도, 월호도, 자봉도, 제도, 추도, 하화도
	영광군	낙월면	각이도, 상낙월도, 석만도, 소각씨도, 송이도, 안마도, 오도, 죽도, 하낙월도
	완도군	고금면	넙도, 초완도
		군외면	고마도, 동화도, 백일도, 사후도, 서화도, 양도, 토도, 흑일도
		금당면	금당도, 비견도, 허우도
		금일읍	금일도, 다랑도, 부도, 섭도, 소랑도, 신도, 우도, 원도, 장도, 충도, 황제도
		노화읍	넙도, 노록도, 노화도, 대장구도, 대제원도, 마삭도, 마안도, 서넙도, 어룡도, 죽굴도, 후장구도
		보길면	보길도, 예작도
		생일면	덕우도, 생일도
		소안면	구도, 당사도, 소안도, 횡간도
		신지면	모향도
		청산면	대모도, 소모도, 여서도, 장도, 청산도
	진도군	고군면	금호도
		의신면	모도, 상구자도, 하구자도
		조도면	가사도, 관매도, 관사도, 나배도, 내병도, 눌옥도, 대마도, 독거도, 동거차도, 맹골도, 모도, 상조도, 서거차도, 성남도, 소마도, 옥도, 외병도, 죽향도, 진목도, 청등도, 하조도
		진도읍	저도
	해남군	송지면	어불도
		화산면	상마도, 중마도, 하마도
전북	고창군	부안면	죽도
	군산시	옥도면	개야도, 관리도, 두리도, 말도, 명도, 방축도, 비안도, 어청도, 연도, 죽도
	부안군	위도면	거륜도, 상왕등도, 식도, 위도, 정금도, 하왕등도

시도	시군구	읍면동	대상지역(섬)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가파도, 마라도
	제주시	우도면	우도
		추자면	추자도, 추포도, 횡간도
		한림읍	비양도
충남	당진시	석문면	대난지도, 대조도, 소난지도
	보령시	오천면	고대도, 녹도, 삽시도, 소도, 외연도, 월도, 육도, 장고도, 추도, 하육도, 호도, 효자도
	서산시	대산읍	옹도
		지곡면	분점도, 우도
		팔봉면	고파도
	서천군	장항읍	유부도
	태안군	근흥면	가의도, 옹도
		안면읍	내파수도, 외도
	홍성군	서부면	죽도

□ 벽지 지역

시도	시군구	읍면동	벽지 지역 (리,마을)	도로명주소
강원	강릉시	연곡면	삼산리(부연동)	부연동길 579~1056, 부연동길 17~96-14
	삼척시	가곡면	풍곡리 (덕풍, 삼방, 광업소)	덕풍길 984-99~1113, 청옥로 4090-6~4090-177, 청옥로 4323-574~4323-645
		노곡면	주지리	주지로 634~754
		하장면	어리	역둔원동로 172~602
			용연리	용연길 215~587
			중봉리(턱골, 소내)	중봉당골길 760-109~767, 중봉당골길 1127-85~1159
	양구군	양구읍	상무룡리	남발길 207~513, 상무룡로 76~786-20, 간척월명로 1715-1~1801, 서호길 13~173, 간척월명로 1863번길 148-327
	영월군	김삿갓면	내리(조제마을)	내리게곡로 2-49~131-12, 와흥길 20~133
		상동읍	구래리(법궁리)	선바위길 364-3~372
	인제군	기린면	진동리 (강선마을, 설피마을)	곰배령길 1~240, 설피발길 1~696, 조침령로 1807~2250
		남면	신월리	신월로 107~608, 신월안길 1~102
		상남면	미산리	개인약수길 1~550, 내린천로 845~1862, 왕성동길 1~176
			상남리(자포대, 엄달골)	자포대길 349~606, 엄달골길 540~637
		인제읍	귀둔리(군량동)	필례로 42~527,
	정선군	북평면	숙암리(단임)	단임길 744~1207-53, 숙암장채터길 58~221
		신동읍	덕천리(연포)	연포길 390~794
			운치리(설논)	설론길 194~208 곰봉길 909~909-3 운치길 448-3~583

시도	시군구	읍면동	벽지 지역 (리,마을)	도로명주소
		여량면	구절리	불당길 10~120, 자개길 310-18~690
		임계면	고양리	반천고양로 1683~1973
			임계리(평양촌)	노루마당길 270-25~270-47, 평양마을길 651~658-7
		화암면	북동리(한바위)	함바위길 40~416-2, 북동뒷골길 82~294
	춘천시	동면	신이리 (연엽골, 우무골)	연엽골길 690~818-16, 우무골길 1~130
			품걸리	야시대로 1387~1740, 품걸길 8-10~482
			품안리(곧은골)	품안리길 1-1~78
		북산면	대곡리	더운샘길 32~102
			대동리(동막골)	대동길 222-66~327
			물로리 (갈골, 삽다리골, 절골)	갈골길 62~272, 삽다리길 14~66 물로길 48~549, 절골길 6~167
			부귀리 (부귀터골)	터골길 15~343
			조교리 (중촌, 지장골, 통골, 삼거리, 무애)	원동조교로 204~676-30
			청평리	삼막길 534~663
	평창군	대관령면	용산리	올림픽로 1062-6~1076-5
			유천리(선바위, 원북동)	원북길 542-6~593-14
		봉평면	유포리(벌막, 축덕)	수림대길 698~714-66
	홍천군	내면	명개리 (명지거리, 목맥동, 통바람골)	명개로 48-3~406, 명지거리길 1~344, 통바람길 15~484-17
			방내리	여차동길 20~826, 여차동길386번길 6-7~76, 여차동길499번길 30~59
			율전리	살둔강변길 9-7~198, 살둔길 10~47 밤바치길 341~1337-11, 밤바치길210번길 37~143, 밤바치길431번길 40~60

시도	시군구	읍면동	벽지 지역 (리,마을)	도로명주소
	화천군	간동면	방천리 (갯골, 운수골, 차골, 배터, 진터, 안골, 골방촌)	신내길 1~125 운수길 135-54~508-14
		화천읍	동촌리 (지둔리, 너다리, 자문리, 번성골)	비수구미길 461~2056
경남	밀양시	단장면	구천리	구천2길 138~497
경북	경산시	용성면	매남리(구룡마을)	구룡마을길 38-9~272, 구룡마을길 58길 10~24-1
	봉화군	소천면	고선리	구마동길 307-45~1518
			남회룡리	개내골길 8~138, 남회룡로 199~557
			두음리(듬골)	두음길 382-24~934-16
		재산면	갈산리	개내골길 92~189
			동면리	금당골길 7~101, 미목길 2~192, 소개골길 9~356
	안동시	길안면	대곡리(개밀)	개밀길 55-18~91
			백자리 (상전의실, 하전의실)	전의실길 213~440
		북후면	석탑리(구듬실, 청골)	구듬실길 19-5~52, 청골길 204~214
		와룡면	도곡리 (무남, 돛질, 창실)	도곡길 440~513, 도곡길 587-24, 도곡길 650~667
			대곡리(돌메기)	대곡구룡길 423-18~570
		임동면	박곡리(예술촌)	지례예술촌길 275~427
			사월리	한절골길 8~384
			위리	위리구룡길 61
	영덕군	지품면	옥류리(외류동, 내류동)	내옥류길 246-17~359, 외옥류길 172-71~265-4
		창수면	백청리	백청1길 43~137, 백청길 32~90, 오서로 1867~1984
		축산면	조항리(젓모치, 배끝말)	조항길 3~35, 칠성길 843-5~846
	영양군	석보면	요원리	맹동산길 284~370-99
			포산리 (윗포산, 아랫포산)	포산길 280~319-99

시도	시군구	읍면동	벽지 지역 (리,마을)	도로명주소
		수비면	본신리(본동)	본신로 100~350-99
			수하리(오무)	반딧불이로 607~708-99, 오무길 1~126-99
			신암리 (갈전, 새신, 신내, 안암)	갈전길 190~260-99, 새신길 160~300 낙동정맥로 4000~4550-99,
		영양읍	기산리 (상기산, 중기산, 하기산)	기산길 60~700, 낙동정맥로 600~700-99
	영주시	단산면	마락리	영단로 1236-1~1522-4
		부석면	남대리	영부로 847-3~1522-4, 영부로890번길46-1~223-8
	울진군	근남면	구산리 (원심, 오르마, 본동)	왕피천로 478~840, 원심길 125~145
		금강송면	광회리	전곡1길 70~901
			소광리	소광1길 252~522-32, 소광2길 1~120
			쌍전리 (깨밭골, 진밭골, 불건, 밭골, 늪재, 갈밭, 달밭, 우무터)	십이령로 98-66~1163-11, 쌍전1길 86~757
			왕피리	거리고길 5~108, 동수골길 548~611-130, 병위길 32~104, 양지길 29~72-11, 왕피길 589~1762-8, 한내길 108-14~339
			전곡리	전곡2길 235-13~311
		매화면	길곡리(내길, 외길)	길곡길마길 18-6~240
	청송군	안덕면	고와리	지경길 667~880
			근곡리	헌실날실길 397-46~423
		현서면	무계리(칠미기)	면봉산길 650~685-1017
	포항시	죽장면	두마리	면봉산길828번길 1~10-15
울산	울주군	언양읍	대곡리(한실)	한실길 205~309
전북	임실군	운암면	월면리	월면길 407
			지천리	지천길 373
충북	옥천군	군북면	용호리	용호길 6~71

시도	시군구	읍면동	벽지 지역 (리,마을)	도로명주소
	제천시	청풍면	방흥리(살여울, 오미고개)	호반로 2408~2471
			오산리 (느티메기, 오미, 웃오미, 중특말)	호반로 2065~2275
			진목리	호반로 2276
	충주시	산척면	석천리(명암마을)	명암길 5~40, 석천길 54~368, 화수길 4~53

※ 벽지지역 해당 여부가 리·마을에 의할 때와 도로명 주소에 의할 때가 다른 경우나 도로명 주소가 확인이 어려운 경우 등에는 리·마을 기준을 우선으로 한다.